

제15차 여성정책포럼

방과후 아동보육의 제도화 방안

◎ 일시: 2003년 5월 2일 (금) 14:00-17:00

◎ 장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공동의 장 5층

초 대 의 글

안녕하십니까?

5월은 우리의 가정과 이웃,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돌아보게 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방과후 아동보육의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보육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보육 즉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해서도 현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중·단기정책을 마련하려는 희망의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아동의 방과후 시간의 안전한 보호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학교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방과후 아동보육은 일본에서는 학동보육, 독일에서는 호르트, 프랑스에서는 어린이회관 혹은 여가센터의 형태로 선진국가들에서 운영중이며, 많은 새로운 시도와 연구를 수행, 현장에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사회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해 국가 대신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매우 다양한 기준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원부재로 방과후 아동보육은 영유아보육의 ‘한 분야’로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과후 아동보육의 합리적 제도화를 위해 오랫동안 현장을 지켜오신 실무자, 학계 및 정부부처의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실정에 맞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유익한 의견을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장 장 하 진

- 14:00-14:15** 인사말 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 14:10-15:15** 주제발제
사회 민무숙 (한국여성개발원 교육연구부장)
- 발제 I **방과후 아동보육 현황**
김인순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이향란 (중앙대학교 강사)
- 발제 II **방과후 아동보육의 쟁점 및 합리적 제도화 방안**
김재인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15:15-15:30** 휴식
- 15:30-16:00** 지정토론
사회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정연찬 (서울시 보육지원과 과장)
이 옥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송경현 (서울 번동초등학교 교감)
강명순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대표)
조수연 (명지대 사회교육원 교수)
이현선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 16:30-17:00** 종합토론
- 17:00** 폐회

주제발제

1. 방과후 아동보육 현황
/김인순(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2

2. 방과후 아동보육의 쟁점 및 합리적 제도화 방안
/김재인(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8

토론

3. 방과후 아동보육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토론
/이옥(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56

4. 방과후 아동보육 아동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송경헌(서울 번동초등학교 교감) 59

5. 현장에서 당면하는 방과후제도 문제와 시급과제
/이현선(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63

방과후 아동보육의 현황

김 인 순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요약 목차>

- I.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현황/2
- II. 방과후 아동보육 수요추계/3
- III.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확보방안/8
- IV.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보육: 교육의 비중)/11
- V. 원하는 방과후 아동보육 교사/12
- VI. 방과후 아동보육의 합리적 제도화 관련 의견/14

I.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현황

1. 시설수

- 총684개소(2002년): 사회복지관운영 273개소, 어린이집운영 121개소, 종교기관 운영(공부방) 214개, 초등학교운영(방과후 아동교실) 76개소
- 지역별 현황 : 서울(204), 경기(115), 부산(91), 인천(90), 수도권 중심
- 이용 아동수 : 684개 x 30명=20,520명, 약 2만명
(초등학생의 0.5%, 저학년의 0.9%에 해당)

<표 1-1> 지역별 시설현황

| | 사회복지관 | 어린이집 | 공부방* | 초등학교* | 전체 |
|----|-------|------|------|-------|-----|
| 전국 | 273 | 121 | 214 | 76 | 684 |
| 서울 | 71 | 38 | 60 | 35 | 204 |
| 부산 | 40 | 40 | 11 | - | 91 |
| 대구 | 18 | 1 | 5 | - | 24 |
| 인천 | 11 | 5 | 23 | 41 | 90 |
| 광주 | 15 | - | 6 | - | 21 |
| 대전 | 15 | - | 9 | - | 24 |
| 경기 | 28 | 32 | 55 | - | 115 |
| 강원 | 8 | 1 | 3 | - | 12 |
| 충남 | 8 | - | 7 | - | 15 |
| 충북 | 8 | 1 | 7 | - | 16 |
| 전남 | 10 | - | 13 | - | 23 |
| 전북 | 14 | - | 1 | - | 15 |
| 경남 | 10 | 3 | 12 | - | 25 |
| 경북 | 11 | - | 2 | - | 13 |
| 제주 | 3 | - | - | - | 3 |
| 울산 | 3 | - | - | - | 3 |

* 자료: 복지관/ 어린이집(2000년), 공부방(2001, 12월), 초등학교(2003. 4월 현재)

2. 운영현황

(2000년도 533개소 전수조사중 302개소 회수결과)

- 담당자자격: ‘사회복지사’(29.0%), ‘보육교사’(21.6%), ‘청소년지도사’(19.8%), ‘유치원교사’(10.2%), 방과후 아동지도사’(5.0%)
- > 사회복지관운영이 많고, 현재 보육교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 나온 결과

방과후 아동보육 현황

- 담당자 보수: 50만원 이하(43.8%), 50-80만원이하(38.8%), 100만원이상은 미미
-> 전체의 80%정도가 80만원이하로 낮은 수준

<표 1-2> 담당자 보수

| | | | | | |
|-------|---------|-----------|-----------|---------|---------|
| | 20만원이하 | 50만원이하 | 80만원이하 | 100만원미만 | 100만원이상 |
| 비율(%) | 33(8.5) | 138(35.3) | 148(38.0) | 37(9.5) | 34(8.7) |

- 부모 부담율: 어린이집> 초등학교> 복지관> 공부방
- 정부지원율: 초등학교> 복지관, 어린이집> 공부방

<표 1-3> 기관유형별 재정부담율

| 구분 | 학부모 | 정부 | 재단/기업 | 자선/기부 | 기타 | 전체 |
|------|-----------|-----------|----------|----------|----------|------------|
| 복지관 | 78(29.8) | 96(36.6) | 37(14.1) | 30(11.5) | 21(8.0) | 262(100.0) |
| 어린이집 | 34(52.3) | 23(35.4) | 2(3.1) | 2(3.1) | 4(6.1) | 65(100.0) |
| 초등학교 | 14(39.9) | 17(48.5) | 1(2.9) | 1(2.9) | 2(5.8) | 35(100.0) |
| 공부방 | 25(22.3) | 13(11.6) | 10(8.9) | 51(45.6) | 13(11.6) | 112(100.0) |
| 계 | 151(31.9) | 149(31.4) | 50(10.6) | 84(17.7) | 40(8.4) | 474(100.0) |

-> 공부방은, 지원이 10%정도에 불과하나 기부금이 55%이상으로, 학부모부담율이 낮음

-> 민간시설인 공부방에 대한 정부지원이 너무 낮음. 정부지원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부담율이 30%이하로 낮게 책정된 것은, 기부금과 낮은 교 사임금, 불충분한 교구, 프로그램수준으로 인해 가능. 기부금은 불안정하다는 점, 그리고 학부모와 아동의 질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어, 안정된 기금에 의한 운영이 필요

II. 방과후 아동보육 수요추계

1. 수요추계 관련 학부모 조사결과(2000년조사, 조사대상:1,799명)

취업별

- ‘필요하다’ 51.0% - 취업모 59.0% > 비취업모 41.9%
- ‘자녀보내겠다’ 46.0% - 취업모 56.0% > 비취업모 36.6%

<표 1-4> 부모의 취업유무별 방과후 아동보육의 필요성/ 이용의사
단위:명(%)

| 구 분 | 취업모 | 비취업모 | 전체 |
|--------|-----------|-----------|-----------|
| 필요하다 | 442(59.0) | 339(41.9) | 781(50.1) |
| 자녀보내겠다 | 417(56.0) | 288(36.6) | 705(46.0) |

p<.001

소득수준별

- ‘필요하다’ 48.9% : 중상류층 52.4%> 상류층 50.4%> 중저소득층 48.1%> 저소득층 47.6%,
- ‘자녀보내겠다’ 45.5%: 저소득층 47.2%> 중저소득층 47.0%> 중상류층 41.8%> 상류층 39.1%

<표 1-5> 소득수준별 방과후 아동보육 필요성/ 이용의사

단위:명(%)

| 구 분 | 저소득층 | 중저소득층 | 중상류층 | 상류층 | 전 체 |
|--------|-----------|-----------|-----------|----------|-----------|
| 필요하다 | 346(47.6) | 337(48.1) | 211(52.4) | 71(50.4) | 965(48.9) |
| 자녀보내겠다 | 341(47.2) | 333(47.0) | 166(41.8) | 45(39.1) | 885(45.5) |

p<.05

자녀학년별

- ‘필요하다’ 49.0% : 1학년 55.6%, 2학년 53.3%, 3학년 50.6%, 4학년 46.4%, 5학년 48.5%, 6학년 40.1%
- ‘자녀보내겠다’ 46.3%: 1학년 52.8%, 2학년 48.0%, 3학년 49.4%, 4학년 42.6%, 5학년 43.4, 6학년 43.2%

방과후 아동보육 현황

<표 1-6> 자녀학년별 방과후 아동보육 필요성/ 이용의사

단위:명(%)

| 구 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전체 |
|------|-----------|-----------|-----------|-----------|-----------|-----------|-----------|
| 필요하다 | 130(55.6) | 187(53.3) | 170(50.6) | 141(46.4) | 167(48.5) | 117(40.1) | 912(49.0) |
| 보내겠다 | 121(52.8) | 156(48.0) | 165(49.4) | 129(42.6) | 150(43.4) | 131(43.2) | 852(46.3) |

p<.001

지역별

- ‘필요하다’ 48.9%:중소도시 53.7% > 어촌 46.8% > 대도시 46.4% > 농촌 46.3%
- ‘보내겠다’ 45.5%:어촌 49.3% > 중소도시 49.2% > 농촌 45.4% > 대도시 40.7%,

<표 1-7> 지역별 학부모의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필요여부

단위:명(%)

|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촌 | 어촌 | 전체 |
|--------|-----------|-----------|-----------|-----------|-----------|
| 필요하다 | 344(46.4) | 362(53.7) | 119(46.3) | 140(46.8) | 965(48.9) |
| 자녀보내겠다 | 293(40.7) | 328(49.2) | 118(45.4) | 146(49.3) | 885(45.5) |

p<.01

-> 모든 변인에서 방과후 보육을 원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거의 50%에 달하며, 자녀를 방과후 시설에 ‘보내겠다’가 45%이상으로 높은 요구수준 보여줌

-> 사교육비 해소방안과 연관시켜 운용 필요. 중소도시, 농어촌의 요구가 큼.

2. 수요추계

- 현재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용 원하는 아동수: 581명(전체 조사대상의 32.3%)
포괄적인 수요추계: 4,138,366명(2002년 초등학생수) x 32.3%= 1,336,692명
- > 취업별, 소득수준별, 학년별에서 수요는 대략 130만여명으로 추산됨

<표 1-8> 변인별 수요 추계

| 구 분 | | 수요(명) | 계(명) |
|-------|-------|---------|-----------|
| 모의 취업 | 취업모* | 776,340 | 1,357,043 |
| | 비취업모* | 580,703 | |
| 소득 계층 | 저소득층 | 501,487 | 1,335,407 |
| | 중저소득층 | 525,497 | |
| | 중상류층 | 241,879 | |
| | 상류층 | 66,544 | |
| 학 년 | 1학년 | 294,568 | 1,372,802 |
| | 2학년 | 228,988 | |
| | 3학년 | 225,677 | |
| | 4학년 | 207,649 | |
| | 5학년 | 215,004 | |
| | 6학년 | 200,916 | |

* 취업모: 아동수x48.6%(취업비율)x38.6%(서비스원하나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
 비취업모: 아동수x51.4%(비취업비율)x27.3%(서비스 원하나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

- 소득수준과 학년이 주요한 변수이므로, 소득수준과 학년을 고려하여 추정

< 표1-9> 소득수준별 수요 추계

| | 비율 | 서비스 원하나 현재 서비스 받고 있지 않는 아동비율 | 수요추계 (1-6학년) | 저학년추계 (1-3학년) | 고학년추계 (4-6학년) |
|-------|------|------------------------------|--------------|---------------|---------------|
| 저소득층 | 36.5 | 33.2(218/656x100) | 501,487 | 255,758 | 245,728 |
| 중저소득층 | 36.7 | 34.6(229/661x100) | 525,497 | 268,003 | 268,003 |
| 중상류층 | 20.8 | 28.1(105/374x100) | 241,879 | 123,358 | 118,520 |
| 상류층 | 6.0 | 26.8(29/108x100) | 66,544 | 33,937 | 32,606 |

- 1단계로 저소득층/ 중저소득층 저학년, 2단계로 저학년 일반, 3단계로 저소득층/ 중저소득층 고학년, 4단계로 고학년 일반의 순으로 정책목표 설정

<표 1-10> 단계별 소요예산 추산

| 시기 | 대상 | 아동수 (명) | 개설수 (개소) | 소요예산(백만) | | | |
|-----------|----------------------------|------------|-------------|----------|--------|--------|---------|
| | | | | 설치비 | | 운영비 | 전체 |
| | | | | 시비 | 구비 | | |
| 2003-2004 | 저소득층/ 중저소득 층 저학년(1-3학년) | 523,761 | 26,188 | 39,282 | 39,282 | 31,425 | 109,989 |
| 2005-2006 | 저학년 일반 | 681,056 | 34,052 | 51,078 | 51,078 | 61,293 | 163,395 |
| 2007-2008 | 저소득층/ 중저소득 층 고학년(4-6학년) | 513,731 | 25,686 | 38,529 | 38,529 | 30,823 | 107,881 |
| 2009-2010 | 고학년 일반 | 664,857 | 33,242 | 49,863 | 49,863 | 39,890 | 139,616 |

- * 개설 교실수: 대상아동수 ÷ 20(1개반 20명 기준)
- * 설치비: 1개소당 3천만원(시지원율 50%, 구지원율 50%)
- * 운영비: 1개소당 연간 1,200만원
- > 로또복권수익사업으로 신청, “방과후 아동보육기금”이나 재단조성

3. 정부의 방과후 시설 확충안

- 2001년 3월말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의 방과후 아동보육현황

| 구 분 | 아동수 |
|----------------------------|-----------|
| 2001년 총아동수 | 2,012,610 |
| 2001년 방과후보육요구 아동수** | 50,427 |
| 2001년 국공립보육시설 방과후 보육아동의 정원 | 2,090 |

- ** 총아동수 x 저소득층비율 7.2% x 보육요구율 34.8%
- 자료: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01.12), 보건복지부 보육과

- 보육요구율 충족 목표치
 - 추정아동 50,427명의 100%달성
 - 2010년까지 현재의 4.1%수준에서 추정아동의 30%충족(15,128-2,090=13,038명)
 - 13,038 ÷ 25(1개반 25명 기준)=605개소(현재 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방과후 보육 시설수 26개 제외, 579개 확충방침)

<표 1-11>국공립 방과후보육시설 확충계획

| 방법 | 확충시설 | 확충기준 | 확충량 | 보육목표규모 |
|------|---------------|-----------------|-------|---------|
| 신규설치 | 방과후보육 전담시설 | 1개소당 정원: 25명 | 579개소 | 15,128명 |

○ 지원예산규모

- 1개소당 지원예산: 정원 25명 x 아동1인당 250만원=361억 8,750만원
- 신축지원예산총액: 신축량 579개소 x 1개소당 6,250만원=361억 8,770만원

<표 1-12>국공립방과후 전담보육시설 신규설치계획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

| 구분 | 2003 | 2003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시설수 | 30 | 50 | 83 | 83 | 83 | 83 | 83 | 84 |
| 소요예산 | 18.75 | 31.25 | 51.87 | 51.87 | 51.87 | 51.87 | 51.87 | 52.50 |

-> 요구대상아동을 저학년으로 국한. 저소득층 7.1%만 적용, 현실적인 요구수렴
 하지 못한 확충계획. 2010년까지 전체 목표의 30%수준설정도 너무 낮음

III.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확보방안

1. 희망장소

아동

- 학년별: 전학년에서 1위 초등학교(60.2%), 2위 별도의 전용시설(21.0%),
 3위 사회복지관(4.9%)
- * 순위에는 변화없으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초등학교는 ↓, 별도전용시설은 ↑
- 소득수준별, 지역별: 동일
- > 현재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운영이 가장 많으나 조사에서는 선호도 떨어짐

<표 1-13>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희망장소

단위:명(%)

|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전체 |
|----------|----------------|----------------|----------------|----------------|----------------|----------------|------------------|
| 초등학교 | 154(65.2) | 233(67.7) | 199(59.8) | 190(61.7) | 171(49.3) | 182(59.1) | 1,129(60.2) |
| 별도의 전용시설 | 21(8.9) | 38(11.0) | 69(20.7) | 68(22.1) | 115(33.1) | 83(26.9) | 394(21.0) |
| 사회복지관 | 15(6.4) | 17(5.0) | 14(4.2) | 20(6.5) | 16(4.6) | 9(3.0) | 91(4.9) |
| 어린이집·놀이방 | 20(8.5) | 21(6.1) | 11(3.3) | 8(2.6) | 14(4.1) | 11(3.6) | 85(5.6) |
| 종교단체 | 8(3.4) | 6(1.7) | 5(1.5) | 7(2.3) | 7(2.0) | 2(0.6) | 35(1.9) |
| 마을회관 | 6(2.5) | 10(2.9) | 6(1.8) | 5(1.6) | 5(1.4) | 2(0.6) | 34(1.8) |
| 유치원 | 4(1.7) | 4(1.2) | 5(1.5) | 2(0.6) | 2(0.6) | 3(1.0) | 20(1.1) |
| 기타 | 8(3.4) | 15(4.4) | 24(7.2) | 8(2.6) | 17(4.9) | 16(5.2) | 88(4.7) |
| 계 | 236 (100.0) | 344 (100.0) | 333 (100.0) | 308 (100.0) | 347 (100.0) | 307 (100.0) | 1,876 (100.0) |

학부모

- 자녀학년별: 1위 ‘초등학교’(60.8%), 2위 ‘별도의 전용시설’(14.2%),
3위 ‘사회복지관’(11.3%), 아동과 동일
 - 지역별 : 자녀학년별과 동일, 아동과도 동일
 - 소득수준별: 저소득층/ 중저소득층/ 중상류층 1위 초등학교(61.6%, 66.0%, 62.2%),
상류층 1위 별도의 전용시설(51.0%)
- > 아동, 학부모 모두 초등학교를 가장 선호하고 있어, 초등학교의 대대적인 개방방안 필요
- > 16개시에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종합센터인 별도의 아동전용시설(가칭 “아동회관”) 필요성 대두

2. 초등학교 방과후사업 현황

(서울시 보육지원과 주관,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지원)

<표 1-14> 방과후 보육시설 예산지원 기준 및 설치비지원

| 구 분 | | 방과후보육시설 | |
|-------|-------------|---------------------------------|---|
| 대 상 | |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 지원 기준 |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 설치비 | ○ 3천만원 시비로 지원(시비50%, 구비50%) <국고보조사업> |
| | | 운영비 | ○ 방과후 아동 20명당 보육교사 1명의 인건비 50% 지원 <시비보조사업> ○ 운영비 및 보조교사 지원 - 운 영 비 : 월 50만원/반당 - 보조교사 : 월 25만원/반당 |
| | 지정된 시설 | 운영비 | <시비보조사업> ○ 운영비 및 보조교사 지원(3개반까지) - 운 영 비 : 월 1,030천원/반당 - 보조교사 : 월 25만원/반당 |

「제15차 여성정책포럼」 방과후 아동보육의 제도화 방안

| | |
|--------------|--|
| 기 타 | ○ 방과후교사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 설치지원내역 | - 2001년 : 22개소 설치 (3억3천만원 지원) - 2002년 : 27개소 설치 (4억5백만원 지원) - 2003년 : 25개소 설치예정(3억7천5백만원 예정) |
| 현재 방과후 교실 현황 | - 35개 학교, 37개 학급, 총 779명(2002년 12월 현재) |

* 국고보조사업 지원비율은 자부담 10% 포함

자료: 서울시 보육지원과,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학과

-> 전국 초등학교 5,384(2002.4월 현재)중 서울지역 35개교 37학급 운영(7,760명)

-> 1개교마다 1개 방과후 교실 운영할 경우 5,000 x 20명=100,000명

-> 아동, 학부모 모두 원하는 ‘학교 방과후교실 개설’의 장애요인 분석 필요

:프랑스의 경우, 방과후 안전사고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

->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 부모간의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참고자료1: 외국의 설치형태

○ 대부분 학교와 전용시설로 해결, 일본과 미국은 초등학교가, 프랑스와 스웨덴은 전용시설이 가장 많음

-> 우리의 경우, 초등학교의 대대적인 확대방안 고려 필요

<표 1-15> 외국의 개설장소

| 국가명 | 일본 | 미국 | 프랑스 | 스웨덴 |
|----------|-------|-----------------------------|-----------|-----------|
| 별도의 전용시설 | 20.9% | - | 레저센터(대부분) | 레저센터(대부분) |
| 초등학교 | 46.0% | 43.0%(공립:28.0% 사립:15.0%) | - | - |
| 보육시설 | 1.6% | 35.0% | - | - |

IV.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보육: 교육의 비중)

1. 희망 프로그램: 보육과 교육의 비중

아동

- 전학년 : 1위 '부족한 학습보충(24.7%)' 2위 '컴퓨터(17.5%)', 3위 '신체 활동 (5.5%)', 4위 '안전한 보호(14.4%)' -> 안전한 보호 < 학업보충, 특별 활동 선호
- 소득계층별: 순위 동일
- 지역별: 동일. 안전한 보호에 대한 선호도 - 대도시, 중소도시 > 농촌, 어촌
- 학년별: 동일. 고학년으로 갈수록 안전한 보호 ↓, 학업보충 & 특기활동 ↑

<표 1-16> 학년별 아동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단위:명(%)

| 구 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전체 |
|-----------|----------------|----------------|----------------|----------------|----------------|----------------|-----------------|
| 부족한 학습보충 | 53(22.3) | 69(19.5) | 88(25.7) | 81(25.4) | 95(25.9) | 91(29.7) | 477(24.7) |
| 컴퓨터 교실 | 47(19.7) | 60(17.0) | 51(14.9) | 51(16.0) | 70(19.1) | 60(19.2) | 339(17.5) |
| 신체활동 교실 | 33(13.9) | 60(17.0) | 52(15.2) | 51(16.0) | 53(14.4) | 51(16.3) | 300(15.5) |
| 안전하게 노는 곳 | 36(15.1) | 76(21.5) | 55(16.1) | 45(14.1) | 46(12.5) | 20(6.4) | 278(14.4) |
| 예능특기 교실 | 46(19.3) | 51(14.4) | 45(13.2) | 50(15.7) | 36(9.8) | 43(13.7) | 271(14.0) |
| 취미활동 교실 | 20(8.4) | 30(8.5) | 30(8.8) | 30(9.4) | 44(12.0) | 34(10.9) | 188(9.7) |
| 기타 | 3(1.3) | 7(2.0) | 21(6.1) | 11(3.4) | 23(6.3) | 14(4.5) | 79(4.1) |
| 계 | 238 (100.0) | 353 (100.0) | 342 (100.0) | 319 (100.0) | 367 (100.0) | 313 (100.0) | 1932 (100.0) |

p<.001

학부모

- 자녀학년별: 1위 학습보충(31.7%), 2위 생활지도(24.0%), 3위 '안전한 보호 (17.5%)' 4위 '특별활동(13.2%)', 5위 '숙제지도(6.9%)
- * 학습보충 : 자녀학년이 높을수록 ↑, 특히 6학년 학부모(39.4%)
- 소득수준별 : 1위 '학습보충', 2위 '생활지도'(23.7%), 3위 '안전한 보호'(17.6%), 동일
- * 학습보충 : 중저소득층(34.0) > 중상류층(31.4) > 저소득층(30.0) >

상류층(24.3%) --> 상류층이 상대적으로 낮음

- 지역별 : 1위 ‘학습보충’, 2위 ‘생활지도’(어촌은 ‘안전한 보호’)
3위 대도시·중소도시-‘안전한 보호’, 농촌-‘특별활동’, 어촌-‘생활지도’

교사

- 전인적 발달(50.7%) > 안전한 보호(37.6%) > 부모의 경제활동 지원, 사회성 발달(4.5%, 4.5%) > 학업보충(1.4%)

->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상적으로는 보육, 교육기능의 균형을 지향해야 하나, 아동, 학부모 모두 “학습보충”이라는 현실적인 요구가 강하므로 이를 충족시키거나,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새로운 운영철학 정립과 홍보 필요

-> 교사와 학부모, 아동과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음.

V. 원하는 방과후 아동보육 교사

아동

- 전학년: 1위 ‘초등학교 교사(38.2%)’, 2위 ‘특별활동 교사(21.0%)’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에 대한 선호도는 아주 낮음
- 학년별: 순위는 변화없음, 고학년 ‘초등학교 교사’ ↓ ‘대학생이나 자원봉사자’ ↑

<표 1-17> 학년에 따른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에 대한 아동의 요구

단위:명(%)

| 구 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전체 |
|------------|----------------|----------------|----------------|----------------|----------------|----------------|-----------------|
| 초등학교 교사 | 114(46.5) | 169(46.6) | 147(42.5) | 106(33.0) | 111(30.3) | 101(32.0) | 748(38.2) |
| 특별활동교사 | 53(21.6) | 84(23.1) | 64(18.5) | 50(15.6) | 83(22.7) | 77(24.4) | 411(21.0) |
| 대학생 자원봉사자 | 22(9.0) | 27(7.4) | 37(10.7) | 84(26.2) | 84(23.0) | 72(22.8) | 326(16.7) |
| 학원강사 | 18(7.4) | 37(10.2) | 43(12.4) | 36(11.2) | 35(9.6) | 34(10.7) | 203(10.4) |
| 가정주부·자원봉사자 | 15(6.1) | 19(5.2) | 25(7.2) | 19(5.9) | 19(5.2) | 14(4.4) | 111(5.7) |
| 어린이집 교사 | 6(2.5) | 14(3.9) | 10(2.9) | 7(2.2) | 7(1.9) | 5(1.6) | 49(2.5) |
| 유치원 교사 | 14(5.7) | 6(1.7) | 5(1.5) | 6(1.9) | 11(3.0) | 1(.3) | 43(2.2) |
| 기타 | 3(1.2) | 7(1.9) | 15(4.3) | 13(4.1) | 16(4.4) | 12(3.8) | 66(3.4) |
| 계 | 245 (100.0) | 363 (100.0) | 346 (100.0) | 321 (100.0) | 366 (100.0) | 316 (100.0) | 1957 (100.0) |

p<.001

학부모

- 전부모 : 1위 '초등학교 교사', 2위 '대학생 자원봉사자' 3위 '주부·자원봉사자'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에 대한 선호도 아주 낮음, 아동과 동일
- 소득수준별: (저소득, 중간층) 1위 '초등학교 교사'(46.2%), 2위 '대학생 자원봉사자(19.3%)', 3위 '가정주부 및 자원봉사자'
(상류층) 1위 '초등학교 교사'(46.2%), 2위 학원강사(28.1%), 3위 '대학생 자원봉사자'(16.6%)로 다름
- 지역별 : 1위 '초등학교 교사', 2위 '대학생 자원봉사자', 3위 '가정주부 자원봉사자'

교사

- 적합한교사: '방과후 아동지도사'(49.3%), '사회복지사'(16.1%), '초등학교 교사'(14.0%), '보육교사'(8.2%), '평생교육사'(5.5%)

-> 아동, 학부모는 초등학교 교사나 대학생이나 주부 등 자원봉사자를 원하며, 시설운영자는 방과후 아동지도사, 사회복지사, 초등학교교사를 원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는 보육교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육교사 선호도는 매우 낮아, 동 부분이 가장 변화를 요하는 부분으로 보임

VI. 방과후 아동보육의 합리적 제도화 관련 의견

1. 방과후 보육의 근거법 및 담당부처에 관한 의견

2000년조사: 방과후 시설담당자

- 방과후보육의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39.5%), ‘사회복지법’(32.4%),
‘아동복지법’(24.6%), ‘청소년기본법’(2.3%), ‘교육법’(1.2%)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50.2%),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26.4%), 교육부(21.7%)
-기관유형별 담당부처: 공부방-‘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50.0%),
사회복지관, 보육시설-‘보건복지부’(59.6%, 40.5%)
초등학교- ‘교육부’(52.6%)
-담당부처 선택시 고려요인: ‘복지기능 수행’(35.0%), ‘교육기능 수행’(22.9%),
‘운영의 전문성’(15.4%), ‘여성관련정책과 직결’(11.3%),
‘여성·자녀문제의 이해’(7.5%), ‘예산확보 능력’(3.8%),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공동수행’(1.5%)

2002년조사: 시설담당자, 학부모, 전문가

2. 보육비용 분담

- 3주체 모두 ‘수익자부담+국가지원’이 가장 많음
- 시설담당자는 국가부담을 매우 낮고, 수익자: 수익자+정부비율= 25:75
- 학부모와 전문가는 수익자 부담은 매우 낮고 수익자+정부: 정부= 25:75

<표 1-18> 보육비용 분담에 대한 의견

| 대 상 | 시설담당자 | 학부모 | 전문가 |
|----------------------|-----------|-----------|-----------|
| 수익자부담 | 12(25.5) | 1(3.2) | 1(7.1) |
| 수익자부담원칙, 법적영세민만 국가지원 | 30(63.8) | 8(25.8) | 10(71.4) |
| 수익자부담+국가지원 | 3(6.4) | 13(41.9) | |
| 국가부담 | 2(4.3) | 9(29.0) | 3(21.4) |
| 계 | 47(100.0) | 31(100.0) | 14(100.0) |

3. 교사: 아동 비율(현재 1:30)에 대한 의견

- 3주제 모두 현행이 ‘부적합’하다에 동의

<표 1-19>교사 대 아동 비율(현재 1:30)에 대한 의견

| 대상 | 시설담당자 | 학부모 | 전문가 |
|-----|-----------|-----------|-----------|
| 적합 | 1(2.0) | 2(6.5) | 2 |
| 부적합 | 48(98.0) | 29(93.5) | 12 |
| 계 | 49(100.0) | 31(100.0) | 14(100.0) |

- 적정비율: 시설담당자와 학부모는 1:15이하를, 전문가들은 현실을 고려 1:20

<표 1-20>교사 대 아동의 적합한 비율

| 대상 | 시설담당자 | 학부모 | 전문가 |
|------------------|-----------|-----------|-----------|
| 1: 10이하 | 26(55.3) | 18(58.0) | 2(16.6) |
| 1:15 | 18(38.3) | 8(24.9) | 2(16.6) |
| 1:20 | 3(6.4) | 5(16.1) | 7(58.3) |
| 1:25 | 3(4.3) | - | - |
| 기타(기관여건별 다양화) | - | - | 1(8.3) |
| 계 | 47(100.0) | 31(100.0) | 12(100.0) |

4. 희망하는 방과후 아동보육 담당교사의 자격

- 아동보육 교사자격: 현행의 보육교사보다 ‘국가가 자격관리하는 방과후 아동지도사’ 나 ‘방과후 아동지도양성과정 수료자’ 즉 방과후 아동지도사가 가장 많으며, 다음이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 교사자격중 소지자로, 보다 강화된 양성과정 희망

<표 1-21> 희망하는 방과후 아동보육 담당교사의 자격

| 대 상 | 시설담당자 | 학부모 | 전문가 |
|----------------------|-----------|-----------|---------|
| 유치원,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11(22.9) | 7(22.6) | 2(14.3) |
| 국가가 자격관리하는 방과후 아동지도사 | 14(29.2) | 11(35.5) | 6(42.9) |
| 방과후 지도교사양성과정 수료자 | 11(22.9) | 6(19.4) | 4(28.5) |
| 아동에 대한 애정있는 사람 누구나 | 7(14.6) | 3(9.7) | - |
| 보육교사 | 3(6.3) | 4(12.9) | 1(7.1) |
| 계 | 48(100.0) | 31(100.0) | 14 |

5. 시설기준(: 면적)에 관한 희망 사항

- ‘최소면적에 제한설정’ < ‘시설넓이에 따른 아동수 제한

<표 1-22> 시설의 면적 기준

| 대 상 | 시설담당자 | 학부모 | 전문가 |
|----------------------------|-----------|-----------|-----------|
| 최소면적에 제한설정 | 12(25.5) | 6(19.4) | 2(16.7) |
| 최소면적 제한아닌, 시설넓이에 따른 아동수 제한 | 30(63.8) | 23(74.2) | 10(83.3) |
| 기타 | 3(6.4) | 2(6.5) | - |
| 계 | 47(100.0) | 31(100.0) | 14(100.0) |

- 아동 1인당 필요면적: ‘현재 1.1보다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최소한 1.1평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더 넓히는 방안을 제시

<표 1-23> 아동 일인당 필요면적

| 대 상 | 시설담당자 |
|------------------|-----------|
| 현재처럼 1인당 1.1평 유지 | 14(29.2) |
| 현재 1.1평 보다 넓혀야 | 29(60.4) |
| 현재 1.1평보다 줄여야 | 2(4.2) |
|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시행 | 3(6.3) |
| 계 | 48(100.0) |

6. 실내외 환경기준

- 실내·외 환경기준: 시설담당자, 학부모 모두 표준적인 환경기준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시설담당자는 표준보다는 기관자율성을 더 원하며, 학부모들은 자율성 보다는 표준안을 더 원하고 있음. 실내외 표준적인 환경기준(안)은 있어야 함

<표 1-24> 실내·외 환경 기준

| 대 상 | 시설담당자 | 학부모 |
|----------------------|-----------|-----------|
| 정부가 표준안을 마련, 동일기준 적용 | 13(27.1) | 7(22.6) |
| 각 기관, 시설의 자율성 | 33(68.8) | 4(12.9) |
| 일부만 표준안 + 일부는 자율성 | 2(4.2) | 20(64.5) |
| 계 | 48(100.0) | 31(100.0) |

참 고 문 헌

- 보건복지부(2001.12),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 교육부(2002), 「교육통계연보」.
- 김재인(1996), “방과후 아동지도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정무장관(제2)실, 한국여성개발원(편),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위한 공청회」, 서울 : 정무장관(제2)실, 한국여성개발원, pp1-60.
- 김재인·서영숙·이옥·이향란 외(2000). 「방과후 아동보육 실태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 여성부.
- 김재인·이향란 외(2000). 「방과후 아동지도사 1·2급 국가기술 자격종목 개발 연구 보고서」,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 법제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전국모임(2002),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법 제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 서영숙·이남정·안소영(1996), “프로젝트 중심 방과후 아동지도”, 서울: 양서원.
- 이 옥(1998).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국제 비교 연구-스웨덴과 미국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2(2), 105-124.
- 임선빈(2002), ‘미국의 방과후 아동지도’, 방과후 아동지도사를 위한 워크샵. 한국방과후 아동지도학회.
- 정미리(2000). ‘프랑스의 방과후 아동지도’, 방과후 아동지도사를 위한 워크샵. 숙명여대 아동연구소.
- 한국아동학회 방과후 아동지도 연구회(2000). 방과후 아동 지도사를 위한 워크샵.
- 서울시청 아동보육센터 children.metro.seoul.kr.
- 교육부 www.moe.go.kr.

방과후 아동보육의 쟁점 및 제도화 방안

김 재 인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요약 목차>

I. 방과후 아동보육의 필요성과 쟁점/19

1. 방과후 아동보육의 필요성/19
2. 방과후 아동보육의 쟁점/20
3. 방과후 아동보육의 문제/22

II. 방과후 아동보육의 제도화를 위한 실천과제/25

1. 방과후 아동보육정책의 목표/25
2. 방과후 아동보육의 제도화 방안/25
 - 가. 방과후 아동보육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27
 - 나.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방안/30
 - 다. 방과후 아동보육 서비스의 행·재정 지원 및 질 관리방안/41
 - 라.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 발전방안/45
 - 마. 방과후 아동보육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수요와 공급 조절방안/47

I. 방과후 아동보육의 필요성과 쟁점

1. 방과후 아동보육의 필요성

-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공급자인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금번 보건복지부의 방과후 아동보육의 합리적 제도화 방안 제시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 아동들이 만족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단계를 마련해주는 기초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은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를 가져옴과 함께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이 보다 강조되면서 학령전 보육과 마찬가지로 학령아동의 방과후 보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방과후 아동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의해 보육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사회복지관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특기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은 ‘방과후 아동지도,’ ‘방과후 아동보육,’ ‘방과후 아동보육’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 영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에 533개소(2001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 인적자원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여성부의 관심과 역할도 추가되어 발전계기를 이루고 있다. 금번 보건복지부가 방과후 아동보육에 역점을 두고자 ‘보육과’를 신설, 운영 하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한 초석을 세우는 일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은 어느 대상 보다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를 이루는데 관건이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 방과후 아동보육은 지역별, 계층별 특성이 외에도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즉, 방과후 아동보육교사는 교원임용 대기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거나 일정 학력이상의 주부도 소정의 연수훈련을 통해 방과후 아동보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민간시설을 개방할 때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하고, 소요재원의 문제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방과후 보육은 아동의 방과후 시간을 안전하게 보

호하게 됨으로써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토록 하기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실에 보육과를 신설한 것은 이와 같이 산재한 보육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 희망적 이다.

2. 방과후 아동보육의 쟁점

- 21세기 지식사회로의 변화로의 이행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율 증가, 성폭력의 저연령화로 인한 아동의 안전보호의 중요성 증가, 사교육비의 증가의 사회문제화,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과의 관계 등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과후 보육의 실태와 요구과약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아동의 보호문제가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 방과후 아동보육환경의 변화로 인한 방과후 아동보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사회 각 분야에서 일고 있는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의 고객중심적 사고로의 전환으로 인한 방과후 아동보육 서비스의 질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시점임을 관련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 방과후 아동보육의 쟁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 아동보육의 공보육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방과후 아동보육의 공보육화가 이루어져 모든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다. 지금까지 개인들에게 맡겨왔던 방과후 아동보육을 국가가 맡을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시켜가야 한다.

둘째,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과후 아동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는 학령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서 오는 문제가 있다. 즉 학령아동들은 발달단계 및 과업이 영유아와 다르고, 그럼으로써 학령아동들과 함께 보육이 될 경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교육설비 또는 교육교재 등 차별화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교사도 초등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방과후 아동들은 영유아들과 차별화된 시설, 프로그램, 인력 등이 주어져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통해 방과후 아동보육의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김홍신 의원과 여성단체연합회에서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영유아보육법의 범주 내에 방과후 아동보육을 제시하여 확대시키고자 하는 방안이나, 2001년까지 국회통과는 이루어지지 않

았다.

셋째,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 부족하다. 지역사회 내에 방과후 아동보육을 실시할 수 있는 많은 공공장소들이 있다. 그럼에도 방과후 아동보육시설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공공시설 등을 방과후 아동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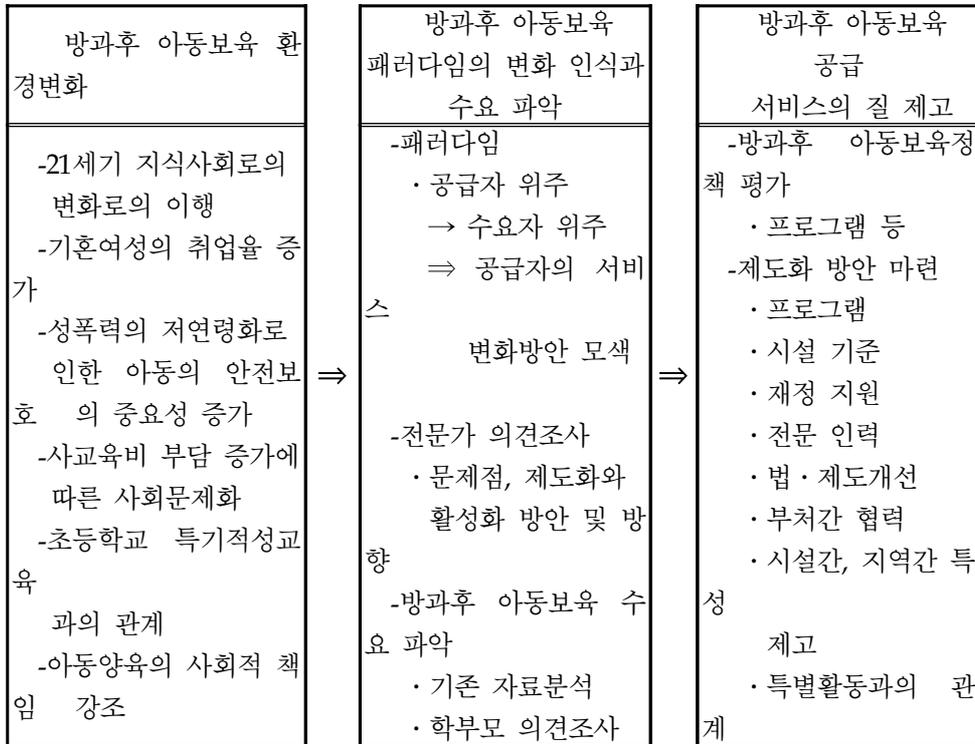
넷째,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시 시설 설치비, 담당자 인건비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운영계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방과후 수혜자들에게도 홍보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령아동을 위한 지역별, 영역별, 학년별 특성을 감안하여 방과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1996)이 개발되었으나, 나선형적 교육프로그램 형식으로 연령과 지역의 특성 등에 맞추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여섯째,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양성 및 활용방안이 미비하다. 대학교 등의 평생교육원에서 방과후 아동지도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을 받은 후 당 기관에서 수료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자격증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방과후 아동보육교사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대우도 학교교사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 지위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배출되고 있는 방과후 아동지도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양성 및 재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과후 아동보육의 환경변화를 통한 쟁점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방과후 아동보육의 문제

▷ 전문가 조사결과

○ 방과후 아동보육의 법적 근거 마련

방과후 아동보육의 법적 근거마련과 관련하여, 보육에 보다 초점을 두는 경우, 보육관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별도의 아동보육법을 제정하는 방식과 대상이 영유아와는 구분되는 아동이라는 점에 초점을 둘 경우,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방과후 아동보육 전담부서의 필요성

현재 방과후 아동보육은 보건복지부의 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향후 방과후 아동보육사업을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견해가 더 우세하다. 먼저 ‘필요’한 이유로는, 방과후 아동보육에서 보육의 개념은 단순보육을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공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문제, 중앙과 지방에서 담당부서가 다르게 되는 문제, 전문적인 전담인력의 확보

문제, 영유아보육의 특수부분이나 덤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전담부서가 필요하며, 우선 전담인력이라도 확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교사기준에서 우선, 학력은, 고졸이상(6명), 전문대 이상(1명), 대졸이상(6명)으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다. 학력별로 양성과정도 달라지고 있는데, 고졸의 경우는 1년 내지 2년간의 방과후 아동보육과정을, 전문대의 경우는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방과후 아동보육과정을, 대졸인 경우는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하여 학력별로 연수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교사자격은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이 적합하다는 의견(1),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한다는 의견(3),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3) 내지는 국가고시(1)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 **방과후 아동보육에서 교사: 아동의 비율**

현재는 방과후보육의 교사:아동의 비율이 1:30으로 되어 있으나, 2001년에 수립한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서는 1:2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방과후 아동보육의 적절한 교사:아동 비율에 대한 의견은 적을수록 이상적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현실을 고려 1:20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 **방과후 아동보육의 시설기준**

방과후 아동보육의 시설기준은 현재는 1인당 1.1평, 한 학급의 규모는 33.3평으로 되어 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합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을 지지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하여, 다른 방식의 기준설정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전체 기준면적을 설정하기보다는 아동 1인당 표준면적을 제시하고, 시설넓이에 따라 아동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

○ **방과후 아동보육의 프로그램의 개발·보급방식**

방과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방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방과후 아동보육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보여준 뒤, 거기에 기관별로 지역실정이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교사모임의 활성화나 보육정보센터 활용방안이 제시되었다.

○ **방과후 아동보육의 비용 부담방식**

방과후 아동보육비용의 부담에 있어, 방과후 아동보육의 담당주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부담비율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의 수익자부담원칙을 지지하는 경우는 1명에 불과하며, 정부와 민간의 공동분담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부담비율이 50%~80%이상으로 나오고 있어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의 공공적인 성격 및 공공성 확보를 강조해 주고 있다. 정부 부담부분에 대한 중앙: 지방의 부담비율에서도 지방이 부담해야한다(4)와 중앙이 80%~50%를 부담해야 한다(6)는 견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는 15%~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부담방식은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 **방과후 아동보육의 문제점**

현재 방과후 아동보육이 당면하고 있는 다각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올바른 인식미비, 방과후 아동보육의 정체성 확립 부족에서 오는 프로그램이나 내용규정의 부재, 방과후 아동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부족, 너무 낮은 보육료,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질 확보, 행재정적 지원부족으로 인한 민간시설에서의 운영상의 어려움 등 현재 방과후 아동보육이 처한 사회적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 **방과후 아동보육 활성화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현재 갖추어 지지 않은 법적인 정비의 필요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가장 높게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지역의 보다 많은 시설을 방과후 아동보육시설로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방과후 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있는 방과후 교사의 확보와 양질의 프로그램이 지적되고 있다.

○ **방과후 아동보육의 제도화에 관련된 의견**

방과후 아동보육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 홍보 및 지원, 방과후 아동보육영역의 사회화, 법적 근거 마련, 시설의 다양화, 방과후 아동보육 교사 제도화와 관련해서 학력보다 능력중시, 방과후 아동보육과 기존 학원과의 차별성 문제, 방과후 아동보육법 필요, 방과후 아동보육의 질 향상, 협의기구(committee) 마련이 제시되었다.

II. 방과후 아동보육의 제도화를 위한 실천과제

1. 방과후 아동보육정책의 목표

- 1)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모든 아동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의 복지와 교육에 기여한다.
- 2) 맞벌이 부부 및 편부·편모의 취업활동을 돕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아동의 가족복지증진을 도모한다.
- 3) 방과후 아동보육 관련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4) 지역별 방과후 아동보육 수요에 기초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 5) 방과후 아동보육프로그램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 6)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의 행정지원 및 질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7) 방과후 아동보육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수요와 공급 조절방안을 마련한다.
- 8)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등 전반적인 정책 평가를 도모한다.
- 9) 과외열풍과 사교육비 감소방안을 강구한다.

2. 방과후 아동보육의 제도화 방안

방과후 아동보육정책의 합리적 제도화 방안은 다섯 분야로 분류하여 제시코자 한다. 즉 법·제도화 개선,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방과후 아동보육 서비스의 행·재정지원 및 질 관리, 방과후 아동보육프로그램 발전방안, 그리고 방과후 아동보육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수요와 공급 조절 방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표 1 > 방과후 아동보육 정책의 합리적 제도화 방안

| 분 야 | | 내 용 | |
|---------------|----------------|--|---|
| 법·제도 개선 방안 | 법 제정 /개정 | -방과후 아동보육 관련법 정본 | ·방과후보육법 제정 ·영유아보육법→영·유 아·아동보육법으로 개정 |
| | | -아동/청소년 관련 법 에 삽입 | ·'청소년기본법', '사회복지법', '평생교육법' |
| | 제도 | -관련부서 설치와 담당 인력 배치 -지역, 대상별 차별화 -융통성있는 시설 설치기준 -지원금 현실화 -담당교사의 자격 및 지위 인정방안 -아동 안전 관련 제도 마련 -교사:아동 비율조절 -지원 재정 확보 | |

「제15차 여성정책포럼」 방과후 아동보육의 제도화 방안

| 분 야 | | 내 용 | |
|------------------------------|---------------------------------|--|--|
| 시 설 확대 및 운영 활성 화 방안 | 시 설 확대 | -전용공간 설치 | |
| | | -기존시설 개방 | ·초등학교 개방 ·공공시설 개방 ·민간시설 개방 |
| | 운 영 활 성 화 | -보육시설 다양화 | ·시설기준 다양화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적 특성의 반영 |
| | | -질적 교사 확보 |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양성과정의 설치 ·교사 Pool의 형성 |
| | | -홍보 |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홍보 |
| -설비·환경구성 | ·안락한 분위기 ·발달에 적합한 환경 및 설비 | | |
| 행 · 재 정 지원 방안 | 행 정 지 원 | -전담부서선정 | ·복지부 내 방과후 아동보육과 설치 ·보육과 내에 방과후 담당 전문인력 배치 ·준비위원회 설치 |
| | | -행정적 협조체계 구축 | ·관계부처간 협력체계 ·방과후 아동보육위원회 구성 ·방과후 아동보육정보센터 마련 |
| | 재 정 지 원 | -사회적 부담을 상향 조정 | ·정부·학부모의 부담을 70:30으로 ·영세민의 아동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에서 방과후 아동보육료 지원위한 재원확보 |
| | | -질 관리 방안 | ·서비스의 질 관리 ·시설 및 프로그램 평가 |
| 프 로 그 램 발 전 방안 | 표준 프로그램 의 구성 | -아동 발달 특성에 적합 -아동 및 학부모 요구에 부응 -지역, 개인, 시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 |
| | 프 로 그 램 개 발 및 평 가 | -방과후 아동보육 자문 및 프로그램 개발단, 평가단 구성 -프로그램 운영 지침서 마련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 |
| 보 육 인 력 | 국 가 자 격 제 도 | -직무분야: '전문교육분야' 신설 -명칭, 등급 설정 -복무규정 | |
| | 양 성 / 재 교 육 | -보육교사양성과정에 방과후 아동보육 교과 시간 증대 -대학 평생교육원의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과정 시간 확대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자격인정 | |
| | -방과후 아동보육 교사 자격증 소지자 활용방안 | ·'방과후 아동지도시설' 운영 분야 ·초·중등학교 특기·적성활동 및 수련활동 분야 ·아동생활지도 및 상담분야 ·부모교육 분야 | |
| | -교사와 아동 비율 | -1:30에서 1:20으로 | |
| 기 타 | -개념, 목적 정립 -자원활동자 -환경 | | |

가. 방과후 아동보육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1) 방과후 아동보육의 개념 및 의미의 전환

▷ 방과후 아동보육의 다양화

- 방과후 아동보육과 특기적성 교육활동과의 연계
- 방과후 아동보육의 중등학생 보육으로의 연장
(연령의 상향 조정 : 12세 -> 15세 또는 18세)

○ 방과후 아동보육과 특기적성 교육활동과의 연계

방과후 아동보육은 초·중등학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즉 방과후 아동보육은 아동들이 학교가 과한 후 장시간을 보호되는 체제이다.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으로서 특별활동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 바, 이를 학교에서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과후 아동보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동들의 특별활동 중 많은 부분을 포괄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방과후 아동보육에서는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방안중의 하나로서 외부 강사나 자원활동자를 활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아동보육과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병행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방과후 아동보육의 중등학생 보육으로의 연장

(연령의 상향 조정 : 12세 -> 15세 또는 18세)

초등학생 대상의 방과후 아동보육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방과후 아동보육의 연령을 18세까지로 연장해야 한다. 방과후 이용아동의 연령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방과후 아동보육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은 저학년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공부방의 경우에는 초·중·고등학생까지 함께 지도를 해왔고, 지금도 초등학교 아동들을 위한 보호 및 지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등학교 단계의 청소년들까지 지도하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엘로우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중등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방과후지도가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을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18세로 정함으로써 앞으로 포괄적,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방과후 아동보육 관련 법 제정 및 개정방안

○ 방과후 아동보육 관련법 정돈

(1) 조치 1 : 단계별 방과후 아동보육 관련법 정돈

1안 : 방과후 아동보육법 제정

2안 : 아동복지법 개정

3안 :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아동보육법으로의 통합, 개정

○ 방과후 아동보육법 제정

방과후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법의 제·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가장 우선적인 방안은 가능하다면 방과후 아동보육법이 제정되어 많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 아동복지법 개정

- 아동복지법은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를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어왔으나, 이제부터는 방과후 아동보육을 포함하여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개념을 도입, 대상범위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방과후 아동보육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법 제정 시 융통성, 포괄적인 입안이 필요함. 즉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공부방, 가정 방과후 등을 배려하는 정책과 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

-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방과후 아동보육이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동 법에 근거한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있다. 방과후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조치를 위한 또 다른 대안은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아동보육법’으로 개정하여 영유아 부문과 방과후 영역이 대등하게 삽입, 제시되는 방안이 있다. 현재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에 방과후 아동보육을 한 조항으로 넣어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인 요구를 감안할 때, 또 아동의 발달단계별 발달과업을 고려할 때 무리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는 아동보육법으로 제정하여 단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법 제정 시 융통성, 포괄적인 입안이 필요하다. 특히 파견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제도를 고려해야하고, 특기·적성 지도교사를 파견하여 순회토록 순회 지도교사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조치 2

-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인 '청소년기본법' '사회복지법' '평생교육법' 등에서 '방과후 아동지도' 항목 삽입, 조처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공급제도의 마련과 함께 초등학교 교사양성과정, 유아교사 양성과정, 보육교사 양성과정, 청소년지도사, 아동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관련 교사 및 지도사 양성과정에 '방과후 아동지도' 과정을 삽입하여 필요 시 방과후 아동보육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과후 아동지도를 위해 초등 및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소정의 방과후 아동보육 이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방과후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3)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개선 방안

- (1) 방과후 아동보육 관련부서를 설치 및 담당인력 배치

- (2)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지역별, 대상별 차별화 방안

적절한 시설, 설비와 교사자격이 갖추어지는 경우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은 초등학교,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공부방 등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융통성이 주어져야 한다. 개인도 한두 가지의 특기를 가지고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집에서 운영하되, 아동을 3-5명 정도 보호,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3) 시설 설치기준의 융통성 부여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 어디에나 방과후 시설이 있어야 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과후 시설의 설치기준과 자격기준은 너무 까다로워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에 적절한 시설, 설비기준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 (4) 지원금(중식비, 학습지 구입비 등)의 현실화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저소득층 아동대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정책은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 (5) 담당교사의 자격 및 지위 인정방안

방과후 아동보육 담당교사 인건비가 구청에서 지급될 때에는 시설운영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장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사에 대

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교사의 인건비를 문서화해야 한다.

(6) 아동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 명료화와 제도화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아동의 안전사고의 문제 해결방안이 중요하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운영 시 아동을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보험(안전관련)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7) 질적 아동보호 장치 마련 및 재정 확보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경우, 한사람의 방과후 아동보육교사가 30명의 아동을 보호, 지도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 1인이 아동을 보호, 지도할 수 있는 범위는 아동 약 10-20명에 이르고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자원활동자의 보조가 필요하다.

나.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방안

1)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확대 방안

▣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전용 공간의 설치

-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은 방과후 아동보육만을 위한 ‘(가칭)아동의 집’과 아동을 위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아동회관’로 분류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전용 공간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아동회관 및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아동 ○○당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 수준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1)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전용시설의 구분

(가칭) 아동의 집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전용공간은 지역사회 내에 다양하고 소규모의 시설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동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즉, 아동들의 집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에 방

과후 아동아동보육 시설이 있어서 아동들이 드나들기 용이하며, 지역 내에서 방과후 아동보육 담당자와 학부모가 오고가며 만날 수 있어서 아동의 문제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방과후 아동보육만을 위한 전용 시설을 (가칭) ‘아동의 집’으로 한다.

(가칭) 아동회관

방과후 아동보육뿐 아니라 아동의 다양한 취미 및 여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치료 사업, 급식 사업뿐 아니라 가족 복지와 지역사회 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등의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전용시설인 (가칭)아동회관의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방과후 아동보육 수요에 의하여 새롭게 신설되어야 할 방과후 아동보육의 학급 수와 이를 위한 필요 재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신설이 필요한 방과후 아동보육 시설

< 표 2 > 아동보육수요에 따른 설치가 필요한 교실 수

| 구 분 | | 아동 수요 | 필요 교실수 |
|-------|-------|-----------|--------|
| 모의 취업 | 취업모 | 769,387 | 38,469 |
| | 비취업모 | 575,502 | 28,775 |
| | 소계 | 1,344,889 | 67,244 |
| 소득 계층 | 저소득층 | 496,996 | 24,850 |
| | 중저소득층 | 520,792 | 26,040 |
| | 중상류층 | 239,713 | 11,986 |
| | 상류층 | 65,949 | 3,297 |
| | 소계 | 1,323,450 | 66,273 |
| 학 년 | 1학년 | 293,108 | 14,655 |
| | 2학년 | 226,948 | 11,347 |
| | 3학년 | 225,434 | 11,272 |
| | 4학년 | 205,604 | 10,280 |
| | 5학년 | 212,817 | 10,641 |
| | 6학년 | 198,806 | 9,940 |
| | 소계 | 1,362,717 | 68,135 |

* 교실수는 교사:아동의 비율을 1:20을 기준

(3) 신설에 따른 소요 예산

< 표 3 >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신설에 따른 소요 예산

| 구 분 | | 아동 수요 (명) | 필요 교실수 (개소) | 예산(천원) | |
|-------|-------|--------------|----------------|---------------|------------|
| | | | | 설치비 | 운영지원비 |
| 모의 취업 | 취업모 | 769,387 | 38,469 | 1,154,070,000 | 49,240,320 |
| | 비취업모 | 575,502 | 28,775 | 863,250,000 | 36,832,000 |
| | 소계 | 1,344,889 | 67,244 | 2,017,320,000 | 86,072,320 |
| 소득 계층 | 저소득층 | 496,996 | 24,850 | 745,500,000 | 31,808,000 |
| | 중저소득층 | 520,792 | 26,040 | 781,200,000 | 33,331,200 |
| | 중상류층 | 239,713 | 11,986 | 359,580,000 | 15,342,080 |
| | 상류층 | 65,949 | 3,297 | 98,910,000 | 4,220,160 |
| | 소계 | 1,323,450 | 66,173 | 1,985,190,000 | 84,701,440 |
| 학 년 | 1학년 | 293,108 | 14,655 | 439,650,000 | 18,758,400 |
| | 2학년 | 226,948 | 11,347 | 340,410,000 | 14,524,160 |
| | 3학년 | 225,434 | 11,272 | 338,160,000 | 14,428,160 |
| | 4학년 | 205,604 | 10,280 | 308,400,000 | 13,158,400 |
| | 5학년 | 212,817 | 10,641 | 319,230,000 | 13,620,480 |
| | 6학년 | 198,806 | 9,940 | 298,200,000 | 12,723,200 |
| | 소계 | 1,362,717 | 68,135 | 2,044,050,000 | 87,212,800 |

* 주 : 필요 교실수: 1개 교실당 20명 기준
 설치비: 1개 교실당 3,000만원 기준
 운영비: 1개교실당 연간 1,280만원 기준

(4)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신설 목표 설정

< 표 4 >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신설을 위한 목표 달성도와 주요 대상

| | 목표달성도 | 주요대상 |
|-----------|-------|-----------------|
| 2003-2004 | 30% | 저소득층과 중저소득층 저학년 |
| 2005-2006 | 60% | 저학년일반으로 확대 |
| 2007-2008 | 80% | 저소득층과 중저소득층 고학년 |
| 2009-2010 | 100% | 고학년 일반으로 확대 |
| 2011년 이후 | | 청소년으로 대상 확대 |

* 목표달성도는 방과후 아동보육 수요 전체에 대한 비율임.

▣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기존 시설의 개방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과후 보호해야 할 아동들은 ‘지금 -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기존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보호해야 할 아동을 위한 방과후 아동보육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초등학교의 개방

요구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 방과후 아동보육 시설이 설치될 경우 (1) 설립주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고, (2) 운영주체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며, (3) 비용부담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고, 일부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4) 학부모의 부담액은 2-3만원 수준이기를 바라고 있으며, (5)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 1인당 10-15명 정도였으면 하고 있다. 그리고 (6) 학급운영은 학년별로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7) 전담자는 초등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초등학교 교사이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8) 프로그램의 내용은 부족한 학습보충과 특별활동(컴퓨터, 영어, 예체능 활동 등)을 원하고 있고, (9) 보조금을 내고 부모의 참여를 유도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동과 교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수적 확산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교실 개방이 가장 쉬우나 물리적 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울타리가 있어 아동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한 장점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향후 빈 학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앞서 언급한 책임의 문제가 명확히 규명된다면 초등학교의 개방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몇몇의 초등학교를 방과후 아동보육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해봄으로써 초등학교를 이용한 방과후 아동보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기타 관련 부처간 협의가 요망된다.

방과후 아동보육 시설의 설립장소를 ‘초등학교’로 하는 이점은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아동들이 학교 내의 방과후 아동보육 시설을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실을 안락하고 편안한 가정처럼 꾸밀 필요가 있다.

학교의 이미지는 공식적이고 딱딱하기 때문에 시설의 변화(바닥난방, 휴식 공간 등)를 주어야 한다. 저학년의 경우는 하교 길에 위험방지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나) 초등학교 교실 개방 시에는 누가 운영주체가 되느냐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방과후 아동보육 시설을 초등학교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의 장단점과 다른 유사한 시설운영자(복지시설, 영유아아동보육시설, 공부방 등)에게 위탁운영 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유리한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직접 운영한다 해도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맡겨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학교는 장소만을 제공하고 다른 시설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책임(행·재정문제, 교사의 처우, 아동의 안전사고 등)의 소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현행 방과후 아동보육 시설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에서 책임지는 제도가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교육부, 방과후나 주말, 방학 중에는 복지부가 관할하게 되는 등의 애매한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민 협동지지망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연계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방과후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방과후 아동보육 시설이 학교에 설치될 경우, ① 방과후 아동보육 시설을 학교가 운영할 경우, 학교장의 책임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장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수업시간에 한정하고 있는 학교의 아동을 위한 보험제도를 연장, 연계하는 방안이 있다. ② 방과후 아동보육 시간에 적절한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라) 방과후 아동보육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의 연계방안으로 적용해야 한다.

초등학교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특기·적성활동과의 연계방안으로 방과후 아동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만약에 아동들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고, 건강과 안전을 감안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초등학교 내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모형이다. 이와 같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초등학교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함께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 방과후 특기·적성활동 프로그램 중의 한, 두가지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마) 학부모(명예교사)와 지역사회 주민이 자원활동자로 활용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명예교사제를 방과후 아동보육 시설과 연결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주민들이 학교의 아동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바) 방과후 아동보육비의 경우, 최소한의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방과후 아동보육비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고, 지도프로그램은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가 아동지도시설 및 교구를, ②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그리고 ③ 학부모가 아동의 교재와 간식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방과후 특기·적성활동활동의 경우, 「각급학교 찬조금품 관리지침」을 통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가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해서도 취해져야 한다.

(사)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학교에서 아동을 방과후에 돌보는 일은 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길도 되는 것이다. 이를 학부모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하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녀의 방과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아동과 학교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이와 같은 초등학교 개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의 교육청 단위별로 초등학교 1개소 이상의 학교를 ‘방과후 아동 보육 시범시설’로 지정하여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운영, 지원토록 해야 한다.

둘째,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시범시설로 운영할 경우, 빈 교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교문 옆에 가교실을 건립하여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마련,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셋째,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학교장이 시설장을 겸하되, 학교장에 대해서는 방과후 아동보육 시범시설을 운영하는데 대한 혜택(아동의 안전사고에의 대책방안 마련, 승진가능점수 배당 등)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도 방과후 아동보육을 담당할 방과후 아동보육교사를 별도로 둔다.

다섯째,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교실의 환경은 영유아아동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가정과 같이 안온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갖추도록 한다.

여섯째,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와 협의 하에 시설위탁을 하도록 한다.

일곱째,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경우, 아동들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연계방안을 구축한다.

여덟째,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활용한 아동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바, 지역 사회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을 통해 아동아동보육의 효과를 배가시키도록 한다.

아홉째, 단위학교 평가지표에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유무’를 한 항목으로 삽입한다.

(2) 공공시설 개방

공공시설의 개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첫째, 공공시설 평가지표에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유무’를 항목으로 삽입한다.

둘째, 공공시설 활용 시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셋째, 공공시설 개방 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넷째, 공공시설 개방 시 방과후 아동보육교사를 배치한다.

다섯째, 자체평가를 통해 활성화를 기하도록 한다.

(3) 민간시설 개방

민간 시설의 개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첫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재정지원을 한다.

둘째,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

셋째,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도모하여 운영 활성화를 기한다.

2)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 방안

가)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전용 공간의 설치

(1)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다양화

(가) 시설기준의 다양화 및 융통성을 갖도록 한다.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은 학교나 가정 부근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작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 하나의 지역사회에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동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다양하고 융통성있는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규모에 따라 정원 아동의 수를 조절한다.

(나) 아동 특성에 맞춘 방과후 아동보육 설비 설치

(2)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초등학교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보육정보센터의 방과후 아동보육관련 연구 및 활동을 강화하거나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방과후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하고, 방과후 아동보육과 관련한 학회, 연구소 등의 연구를 촉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3) 지역적 특성의 반영

빈곤지역 아동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4) 질적 방과후 교사의 양성 및 확보

(가) 방과후 담당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양성과정 및 교육과정 설치

(나) 교사 Pool 운영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사 Pool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과후 아동보육교사들은 한, 두 가지의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다양한 활동을 혼자서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교사가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목록화하고 이를 지역사회 내에서 이동하기 용이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정보망이 필요하다.

(5)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홍보

방과후 아동보육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방과후 아동보육의 개념과 장점 등을 적절하게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

라.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설비 및 환경 구성 방안

(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안락한 분위기 조성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은 안락한 분위기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방과후 아동보육은 아동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야 한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아동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하고, 교사는 어머니와 같이 애정과 정성으로 보살피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나)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시설, 설비의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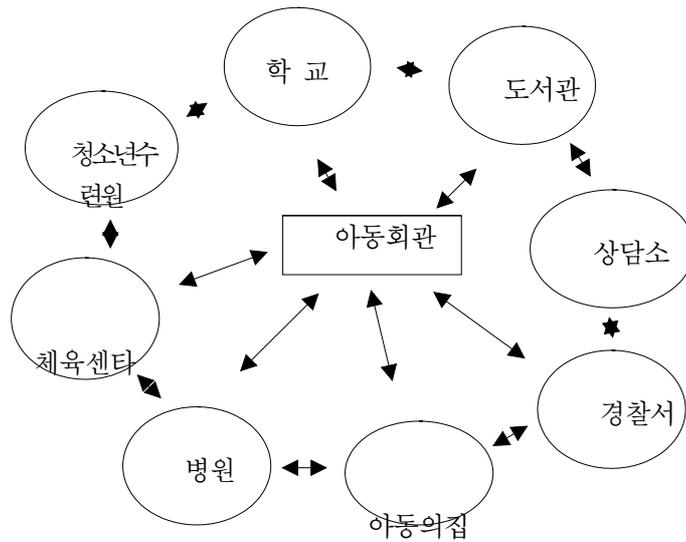
현재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영유아용 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이란 신체적 특성에서나 혹은 주요 활동들에서 영유아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위한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다양화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학부모와 아동의 요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설에 대한 요구는 초등학교가 단연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독립적 공간을 원하고 있었다.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 모두 학습보충을 가장 원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아동은 컴퓨터와 영어, 학부모는 생활지도, 안전한 보호, 영어, 컴퓨터 등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현실에서 학습에 대한 지나친 요구는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학습 부진 아동을 위한 학습지도와 숙제지도를 통하여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적이고 창의적 인간을 요구하는 21세기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아동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1) 시설기준의 다양화 및 융통성

방과후 아동보육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이다. 아동이 방과후 이곳 저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가정과 가까운 곳에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따라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은 학교나 가정 부근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 하나 있는 것 보다는 규모가 작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 하나의 지역사회에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동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다양하고 융통성있는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즉, 규모에 따라 정원 아동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다. (가칭)아동의 집은 소규모로 방과후 아동보육만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소규모의 공간이며 (가칭)아동회관은 지역의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센타 역할을 함과 동시에 아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 문제와 관련된 지역의 다양한 시설이나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아동 관련 기관과 방과후 아동보육시설간의 연계망

(2)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초등학교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보육정보센터의 방과후 아동보육관련 연구 및 활동을 강화하거나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방과후아동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하고, 방과후 아동보육과 관련한 학회, 연구소 등의 연구를 촉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은 발달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발달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 아니라 이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또한 장애아동, 영세지역의 아동, 농어촌지역의 아동 등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3) 지역적 특성의 반영

빈곤지역 아동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빈곤지역 아동의 보호·지도의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아동들이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탈피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부모들이 일하는 시간이 도시처럼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적절하게 방과후 아동보육 운영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다) 질적 방과후 교사의 양성 및 확보

(1) 방과후 담당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양성과정 및 교육과정 설치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된다 해도 이를 실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교사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따라서 질적으로 우수한 교사를 길러내고 확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육과정에 방과후 아동보육과 관련한 과목은 ‘방과후 아동보육’가 유일한 과목이며, 총 32시간이며, 이 정도의 과정을 통해 방과후 아동보육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방과후 아동보육과 관련한 전문성을 지닌 교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교사 Pool 운영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사 Pool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과후 아동보육교사들은 한, 두 가지의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다양한 활동을 혼자서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교사가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목록화하고 이를 지역사회 내에서 이동하기 용이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정보망이 필요하다.

라)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홍보

방과후 아동보육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방과후 아동보육의 개념과 장점 등을 적절하게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초등학교, 지역생활신문, 케이블TV, 일반 방송 등을 통한 방법이 있으며, 방과후 아동보육을 원하는 학부모를 위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터넷 맞춤형 서비스도 필요하다.

마)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설비 및 환경 구성 방안

(1)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안락한 분위기 조성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은 안락한 분위기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방과후 아동보육은 아동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야 한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아동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교사는 어머니와 같이 애정과 정성으로 보살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더불어 학교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아동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숙제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외 아동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지적, 사회적, 정의적, 신체적 영역에서의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방

과후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바닥 난방을 하는 것이 좋으며, 아동들이 혼자 있고 싶거나 쉬고 싶을 때 설 수 있는 공간의 마련 역시 중요하다.

(2)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시설, 설비의 차별화

영유아와 아동의 발달특성의 차이로 인한 시설, 설비 차별화가 필요하다.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영유아와 아동기의 발달특성이 다를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영유아기는 보다 의존적이며, 아동기는 보다 활동적인 특성을 갖는다. 연령의 차이에 따른 신체적 차이와 지적, 정의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특성이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시설 및 교재교구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는 함께 보호·지도하기 어려운 문제를 낳는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영유아용 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이란 신체적 특성에서나 혹은 주요 활동들에서 영유아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위한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아동 특성에 맞춘 방과후 아동보육 설비 설치

방과후 아동보육은 아동의 특성에 맞춘 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란 아동들이 학교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아동들이 숙제도 하고, 아동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방과후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 아동보육의 목적,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시설환경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1) 학습 및 숙제지도 공간, (2) 놀이공간의 확보 및 프로그램에 따른 교재·교구의 준비, (3) 기본적인 교재·교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 (4) 아동들이 혼자 있고 싶은 경우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혹은 휴식공간의 확보 등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설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다. 방과후 아동보육 서비스의 행·재정 지원 및 질 관리방안

1) 행정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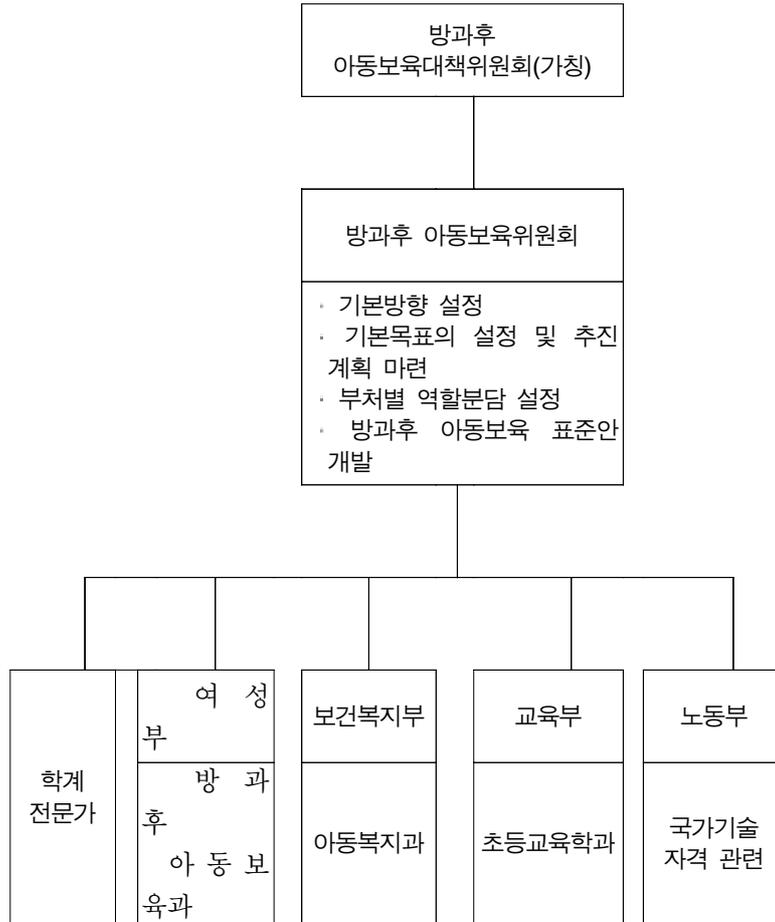
(1) 전담 부서 선정

- 방과후 아동보육업무의 공공화, 활성화를 위해 전담 부서 선정은 필요하다
- 적합한 부처로 여성부 또는 보건복지부내에 방과후 아동보육과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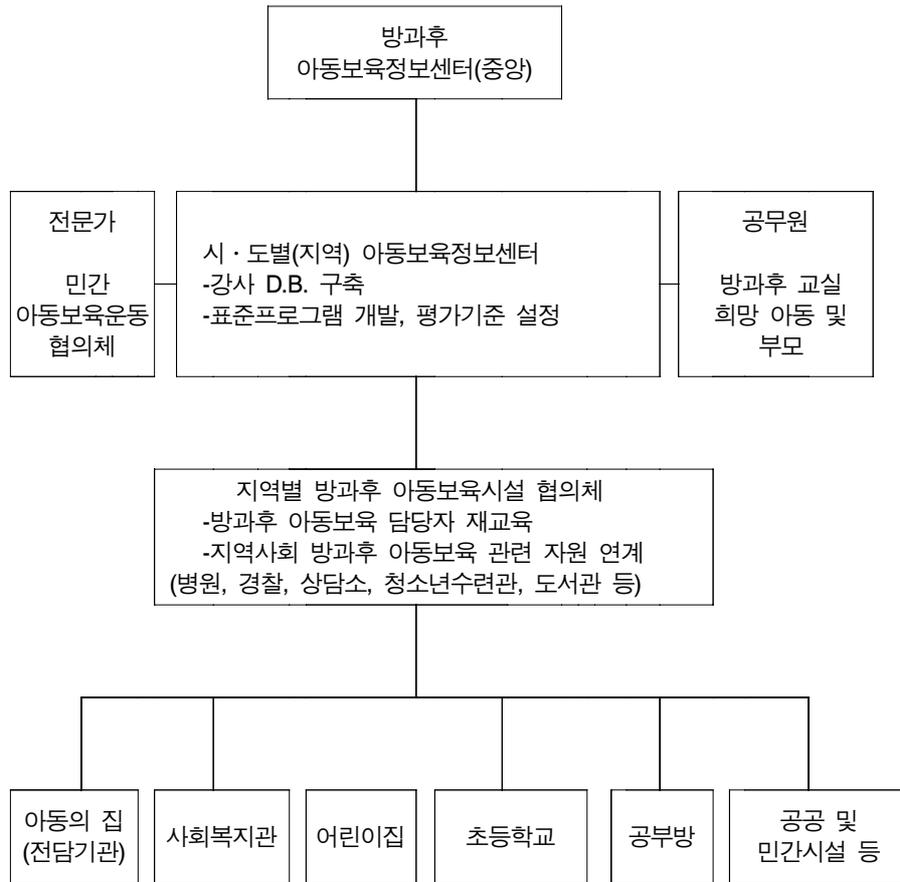
(2) 행정적 협조체계 구축

- ‘방과후보육위원회’ 구성으로 관계부처간 방과후 아동보육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방과후보육정보센터’와 지역별 ‘방과후 시설협의체’마련으로 정보·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방과후 아동보육위원회를 구성체계(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연계도



(그림 3)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연계를 위한 행정적 협력체계

2) 재정적 지원방안

가) 재정지원에서 사회적 부담률 상향조정

- 2003-2007년까지 정부: 학부모 부담율을 60:40, 2008년 이후 정부: 학부모 부담율을 70:30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형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1)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은 전면적인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모가 장기질병, 노화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음에도 영세민은 아니어서, 이른바 시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가정의 아동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 표 5 > 단계별 정부의 재정지원 형태

단위:(%)

| 구 분 | 부담 형태 |
|----------------|------------------------|
| 3단계(2008년 이후) | 정부 지원(70%)+학부모 부담(30%) |
| 2단계(2003-2007) | 정부 지원(60%)+학부모 부담(40%) |
| 1단계(2002년 이전) | 정부 지원(50%)+학부모 부담(50%) |
| | 정부 지원(20%)+학부모 부담(80%) |
| | 전액 학부모 부담 |

* 단계별 다양한 재정부담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주류는 위와 같아야 할 것임.

- 보육료 지원 대상아동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이 아닌 비취업부모의 아동인 경우라도 보육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아동을 동사무소에서 파악하여, 보육료를 지원토록 해야 한다.
- 고용보험에서 방과후 아동보육료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나) 방과후 아동보육 질 관리 방안

- 방과후 아동보육 서비스의 질 관리 방안

방과후 아동보육은 영유아보육과 별도의 추진체계, 예산 배정, 운영관리가 요구된다. 방과후 아동보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시설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과, 새로운 기준으로 시작되는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지역별 정기적인 방과후 아동보육 수요조사 및 기관실태조사로 지역의 수요 충족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계획과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시설예산사용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도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할 것이다.

-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방법 마련

방과후 시설 및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 평가항목, 평가주체가 정해져야 하며, 평가결과는 방과후 아동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신속히 반영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분야 및 세부항목을 설정해야 하며, 평가주체는 보건복지부 보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육과, 학부모, 교사협의체, 방과후 프로그램 연구진, 방과후 아동보육학회, 관련 시민단체의 분과위원회 등이 해당될 것이다.

< 표 6 > 미국, 스웨덴의 방과후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 사례 | 평가내용 |
|-----|--|
| 미국 | -면허나 인가 받은 프로그램 비율 84% 주정부기구 공인프로그램 76%, 공적기관, 유아교육협회 공인 23% 공립초등학교 시설: 허가 면제 -공식적인 프로그램 평가: 주정부기구(49%), 프로그램 스텝(42%), 부모(15%), 교육위원회, 교육청(15%), 연방정부 기구스텝, 기금지원단체의 스텝, 지역단체, 프로그램 책임자 등 -정책적 관심과 연구지원: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국회청문회, 교 육부차원의 연구, 정부 및 민간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질적 보육프로그램 제공 을 위한 정책(예: 주정부차원의 보육지침과 질적 표준 제시) |
| 스웨덴 |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스텝, 학부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정책에 신속 하 게 반영(예: 개방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 레저센터에서의 교육활동 강화, 지방자 치단체에 학 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의무화 조치) -정책적 관심과 연구지원: 프로그램 관련 연구경향은 표준적인 방과후 아동보 육 시설 운영으로 공통적인 환경이 제공되고 있어,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보다 는 외국 프로그램과 비교·평가한 연구물들이 보고됨-> 방과후 프로그램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 |

방과후 시설 및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 평가항목, 평가주체가 정해져야 하며, 평가 결과는 방과후 아동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신속히 반영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분야 및 세부항목을 설정해야 하며, 평가주체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계(보육아동계, 혹은 보육담당), 학부모, 교사협의체, 방과후 프로그램 연구진, 방과후 아동보육학회, 관련 시민단체의 분과위원회 등이 해당될 것이다. 시설 및 프로그램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표 7 > 평가 항목

| 평가분야 | 평 가 항 목 |
|---------------|---|
| 공간과 설비 | 실내공간, 활동공간, 사색공간, 방 배치의 적절성, 일상적인 설비, 학습과 오락설비, 휴식공간, 시설에 대한 접근성, 교사 공간 등 |
| 건강과 안전 | 건강관리, 응급조치와 안전정책, 안전 실습, 출석과 귀가, 식사와 간식, 개인 위생 등 |
| 활동 | 미술, 음악, 율동, 블록구성, 드라마와 연극, 언어, 수학, 과학, 문화적 의식 등 |
| 상호작용 | 교사-아동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아동-아동간의 상호작용, 부모-교사간의 상호작용, 교사-학교담임과의 상호작용 등 |
| 프로그램 구조 | 일과, 자유선택활동, 프로그램 교사와 제공자의 상호작용, 지역사회자원 활용 등 |
| 교사발전 | 교사회의, 교사워크샵, 교사 발전기회, 감독과 평가 등 |
| 특수 요구 세부 준비사항 | 특수아 교육, 개별화 교육, 상호작용 촉진 등 |

라.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 발전방안

1) 표준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의 구성

(1) 초등학교 아동의 발달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맞아야 한다.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고 또래와의 관계 중시, 집단적인 소속감과 동지애를 통해 사회와 자신을 바라본다. 그리고 남녀의 차이에 민감하며, 자신의 장래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어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왕성한 신체활동요구와 자기주도적 활동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초등학교에서는 아동의 학습에 대한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1, 2학년은 통합교과에 의한 수업을 하고, 3학년 이상이 되면 교과중심의 수업을 하며, 5, 6학년은 초등학교의 최고 학년으로서 학생자율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은 1, 2 학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3, 4 학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5, 6학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아동 및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은 방과후 아동보육의 철학을 바탕으로 아동과 부모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이다. 아동들은 방과후 아동보육에서 요구하는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보충학습(24.7%), 컴퓨터(17.4%),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14.4%), 특기교육(14.0%)의 순으로 희망했다. 부모들은 보충학습(31.0%), 생

활지도(24.0%), 안전한 보호(17.5%), 특별활동(13.2%) 등의 순으로 희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은 안전한 보호를 받으며 보충학습 시간을 가지는 정도의 학습시간을 가지는 것과 함께, 각종 특별활동과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놀이지도가 바람직하며,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질문과 재미있는 환경중심 활동,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게 하는 작업중심 활동(프로젝트 학습)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지역별, 개인별, 시설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은 (1) 모든 아동에게 적용 가능한 공통프로그램과 (2) 지역 및 시설 특성 및 아동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방과후 아동교실의 희망장소에 대해 대부분의 아동(60.2%)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과후 아동교실이 생기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방과후 아동보육만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20.8%)'고 하였으며, 그 밖에 '어린이집', '놀이방', '마을회관', '사회복지관' 등을 들고 있다. 전 학년에 걸쳐 '초등학교'가 1순위로 나타났지만 비율을 살펴보면 고학년의 아동이 저학년의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낮으면서 '새로운 전용공간'을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에게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방과후 아동보육 공통프로그램은 '안전한 보호,' '숙제지도 및 보충학습,' '생활지,' '특기 교육,' '점심 및 간식 제공' 등에 중점을 두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적 특성 및 개인별 특성에 맞추어 ① 학년별 프로그램, ② 활동별 프로그램, ③ 지역특성별 프로그램, ④ 시설특성별 프로그램 ⑤ 계절별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의 주간/일과 운영
-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의 아동 집단 구성
-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의 환경 구성
-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의 구체적 활동방법 및 전개 과정
-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의 부모 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교사교육

(4) 프로그램 인증제 실시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는 프로그램과 이를 실행하는 교사, 시설 환경 등에 관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증제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할 수도 있으며 방과후 아동보육 관련 연구기관을 통한 관리도 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다양한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교사를 훈련하며, 평가하는 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사회의 다양화에 걸맞는 것일 수 있다.

2)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1) 방과후 아동보육 자문 및 프로그램 개발단, 평가단 구성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의 대상별, 특성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중앙에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2)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지침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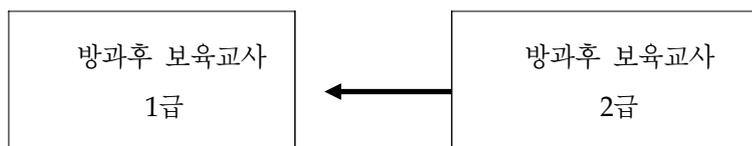
방과후 아동보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이 아동관련 지식, 프로그램 진행 방법, 방과후 아동보육 운영기법,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법, 방과후 아동보육 재정 확보 방법,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 개발 기법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고 있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사교육 및 지침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 방과후 아동보육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수요와 공급 조절방안

1)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국가자격제도 도입

(1)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직무분야를 ‘전문교육분야’로 새롭게 신설

방과후 아동보육교사는 기존 국가 자격체계에 맞추어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교육분야’를 신설토록 한다. 즉 방과후 아동보육교사는 인간을 다루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1급, 2급을 ‘전문교육분야(1급, 2급)’로 신설해야 한다.



(2)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자격명칭 확정 및 등급 설정계기 마련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자격명칭을 확정해야 한다. 10여년간 사용되어온 방과후 아동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서 12세 아동까지 연장하여 보호 및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방과후 아동보육’이 보육 교사 양성 과정과 재교육과정의 교과로 설정되었다. 이와 같이 공식 명칭화한 방과후 아동보육교사는 현장에서는 ‘교사’로 명명되며, 현장 활동가와 학부모에게 익숙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3)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관련 법 및 규정 제정, 신설

① 영유아보육법을 ‘아동보육법’으로 개정하여 방과후 아동보육 관련 조항을 대폭 삽입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② 아동복지법을 일반아동을 위한 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안으로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삽입, 그 활용내용, 방법, 방안 등에 대해 언급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③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방과후 아동보육법’을 제정하여 초등학생과 중등학생까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 보호와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다.

(4)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 관련 법 및 규정 마련, 실행

-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관련 지식변화를 자격검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소 2년을 주기로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 방과후 아동지도사의 전문인력으로서의 의무 및 권리에 관련된 규정을 방과후 아동보육 관련법에 신설한다.
-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계속 및 보수교육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적용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한다.
-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 관련 법 및 규정 마련, 실행해야 한다.

2)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과정 설치

(1)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양성교육 및 재교육과정 설치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아동보육법 시행규칙의 아동보육교사 양성과정에 ‘방과후 아동보육’ 교과를 삽입토록 하고 있다. 아동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을 행할 경우, 아동보육교사과정과 방과후 아동보육교사과정을 별도로 인정, 운영해나가는 방안이 최선이다. 아동보육교사 1,000시간 과정으로도 아동지도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초등학생을 보호, 지도하는 점에 있어서는 보다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됨을 인식, 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공급제도 마련을 위해 (1)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양성과정(약

1,200시간)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2)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해 초등 및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 관련 교사 및 지도사를 위한 양성 과정에 ‘방과후 아동지도’ 교과를 삽입, 이수토록 해야 한다. (3)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위한 보수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2)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방과후 아동보육’ 교과의 시간 증가

보육교사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운영, 아동을 보호, 지도토록 하기 위해서는 ① 보육교사 양성과정 1,000시간 중 약 30시간 정도를 할애하고 있는 현재의 시간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활동을 이해하고 지도하기에는 역부족인 시간이다. ②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에서도 약 40시간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이도 대폭적으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3)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과정시간 대폭 확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약 60시간 등으로 양성되고 있는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수료자들도 이론 및 실습이 방과후 아동보육을 실시하기에는 역부족인 시간이다.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계속 및 보수교육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적용하여 자격검정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4)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자격 인정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자격인정을 위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방과후 아동보육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보육교사과정’과 ‘방과후 아동보육교사과정’을 두어 다른 과정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방과후 아동보육을 하게 될 보육교사 자신들이 초등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과정을 달리하여 보육교사가 방과후 아동보육을 할 경우,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에 버금가는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이 부여되어야 한다.

(5) 방과후 아동보육교의 위상, 개념에 대한 대 국민 홍보 필요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방과후 아동보육이란 특기·적성교육이 아님을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사설학원과 차별화된 방과후보육의 대 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6)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시 기존 교육경력 인정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 민간차원의 교사교육이 자격증 입안 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경력(공공, 민간등)이 충분히 인정되도록 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전략

(1) 법적 근거 마련 및 조항의 내용

- 방과후 아동보육 종사자의 명칭으로 방과후 아동보육 시설장(방과후 아동보육교사 3년이상 경험자로 승급교육 이수자)과 방과후 아동보육교사가 있으며 이들 이외의 종사자는 영유아아동보육시설 종사자에 준하도록 한다.
-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의무와 권리는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활동을 계획 운영하며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활동을 지도한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건강과 영양 지도, 여가활동의 지도를 포함하며,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시간은 1일 평균 6시간 내외일 수 있으나 방과후 보호와 교육활동의 준비와 연구 시간 2 시간을 포함하여 노동시간 8시간인 전일제 근로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자격 및 양성제도

- 초·중등 교사 자격 소지자로서 소정의 방과후 아동보육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방과후 아동보육 교사의 수급에 교원임용 대기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중등 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일정시간의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자격 연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방과후 아동보육교사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에서 아동복지 및 아동교육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방과후 아동보육실습과정(일정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3)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자격증 소지자의 활용방안

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운영분야

- (1)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
- (2)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공부방 등에서의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
- (3) 공공 및 민간시설에서의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

나) 초·중등학교의 특기·적성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분야

(1) 특기·적성 교육활동

초등학교 중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수는 5,505개소(99.3% : 학생수 1,820,971명 48.5%)에 달한다. 방과후 아동보육교사가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적합한 능력을 한가지 이상 갖도록 지도되면 방과후 아동교실에서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

교의 특기·적성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2) 청소년 수련활동

방과후 아동보육교사는 보육교사와 청소년지도사와 특정 전공분야에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단계의 아동을 위한 보호와 지도를 맡음으로써 영유아(0-6세)중 고연령인 5-6세 아동을 위한 보호, 그리고 청소년(9-24세)중 중등학교 단계의 연령층(12-15세, 15-18세)을 위한 지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아동생활지도 및 상담분야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에서의 아동생활지도는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담기법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상담기법은 아동 및 청소년 문제지도 등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4) 부모교육 분야

방과후 아동보육교사는 아동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지도하기 위해 아동과 상담해야 함은 물론이고 부모와도 아동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방과후 아동보육교사는 부모가 방과후 아동교실에서의 아동의 생활상과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토록 하기 위해 부모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기 위해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방과후 아동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1: 20명으로 한다) NAEYC 권장 바람직한 교사 대 아동비율 6-8세: 1: 10, 9-12세: 1:12~20으로 1:10이 바람직하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 20으로 정한다.

기타 방과후 아동보육 활성화 방안으로 방과후 아동보육의 개념 및 목적 정립, 방과후 아동보육의 자원활동자 구성 및 역할, 방과후 아동보육의 환경구성, 방과후 아동보육 교사협의체 구성 지원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아동복지법」(1981)
- 영유아보육법」(1991)
- 교육부(2000), 「교육통계연보」
- 보건사회부(1999), 「여성과 취업」
- 보건복지부(1995), 「보육사업지침」
- 보건복지부(1996), 「방과후 아동보육사업 활성화대책」
- 보건복지부(2000), “내부자료”
- 교육부(2000), 「99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결과(내부자료)」
- 서울특별시(2000), “내부자료”
- 공동육아연구원·서울YMCA·참여연대·한국보육교사회·한국여성단체연합
(1999), 「차등보육료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 김재인(1996), “방과후 아동지도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정무장관(제2)실, 한국여성개발원(편),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위한 공청회」, 서울 : 정무장관(제2)실, 한국여성개발원, pp1-60.
- 김재인(1996),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숙명여대 아동연구소
(편), 「아동연구」, 숙명 장학 90주년 기념 아동연구소주최 학술대회 특집
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pp.107-152.
- 김재인·유희정·조연순·박영애·서영숙·이옥·이향란 외(2000), 「방과후 아동
보육 실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 여성부.
- 김재인·유희정·민무숙·이향란(2000), 「방과후 아동지도사 1,2급 국가기술 자격
종목 개발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 김재인·서영숙·이옥·김인순·이향란(2002), 「방과후 아동보육의 합리적 제도화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인쇄중).
- 서영숙·이남정·안소영(1996), “프로젝트 중심 방과후 아동지도”, 서울: 양서원.
- 이 옥, 노성향(1996), “방과후 아동 보육론”, 서울: 창지사.
- 세계화추진위원회(1995.1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서울: 세계화추진위원회
- 한국교육개발원(1982), 「국민학교 아동, 교사, 학부모의 진로의식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1994),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여성
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지음·삼성복지재단 엮음(1997),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프로그

램」, 서울: 교육과학사.

한국여성개발원(1999), 「1999 여성통계연보」,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全國學童保育連絡協議會(編), 「學童保育-實態と改善の課題」 東京: 自治體研究社.

全國學童保育連絡協議會(1994), 「學童保育-實態調査のまとめ」, 東京: 全國學童保育連絡協議會.

서울시청 아동보육센터 children.metro.seoul.kr

교육부 www.moe.go.kr

Baden, Ruth Kramer, Andrea Genser, James A. Levine, Michelle Seligson(1982), School-Age Child Care, London: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Gakudokurabu, After-School Club for Children, Handbook, Setagaya-ku.

Ruth Kramer Baden, Andrea Genser, James A. Levine, Michelle Seligson(1982), School-Age Care: An Action Manual, Massachusetts: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Sciarra, Dorothy June, Anne G. Dorsey(1990), Developing & Administering A Child Care Center, New York: Delmer Publishers Inc.

토론

- 방과후 아동보육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토론
/이옥(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56

- 방과후 아동보육, 아동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송경현(서울 번동초등학교 교감) 59

- 현장에서 당면하는 방과후제도 문제와 시급과제
/이현선(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63

‘방과후 아동보육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토론

이 옥(덕성여대 아동가족학

과)

방과후 보육의 제도와 방안은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제기되어왔다. 물론 영유아 보육법 16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에 준하는 방과후 보육이 운영될 수는 있겠지만 영유아 보육과는 개념과 프로그램 활동 등에서 크게 다른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발제원고는 그동안 관계전문가나 방과후보육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방과후 보육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발제원고 속에는 방과후 보육의 현주소와 문제점, 방과후 보육을 제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비롯해, 방과후 보육의 유형, 방과후 보육에 대한 연차별 보육비용 분담율 개선일정, 방과후 보육을 지도하는 교사의 양성제도, 그리고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방향에 이르기까지 방과후 보육의 거의 모든 현안을 담고 있다.

발제자가 제시한 여러 방안들은 대단히 이상적인 방안도 있고 이상보다는 보다 현실을 고려한 방안들도 있다. 예를 들어 별도의 방과후 보육법을 제정하는 안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방과후 보육교사와 관련하여, 현행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방과후 보육 관련 교과 과정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선호는 방과후 보육 이해당사자들에 따라 다를 것이다. 현장에서 현재 방과후 아동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재정적 현실을 감안해야 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입장은 당연히 다를 것이다. 이제는 방과후 보육에 대해 희망하는 이상과 제약이 많은 현실 속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과후 보육 발전 방안을 선택하여 추진하되, 이것이 장기적으로 방과후 보육의 이상적 발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일이다. 영유아 보육의 제도화 경험 13년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교훈 삼는 것도 필요하다.

법적 근거 마련 방안에 대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의 법적 근거를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방과후 보육법을 새로이 제정하기보다는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시 방과후 보육 관련 별도의 방과후 보육 조항을 명시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그 내용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내용에 준하는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어지도록 한다.

동시에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포함시키도록하는 것이

다. 현행 아동복지법 16조의 9개 아동복지시설이 별도의 방과후 아동지도시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3항) 이미 근거는 있는 셈이다. 아동복지법령에 방과후 보육 서비스와 관련한 세부규정이 포함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

한편, 초등학교시설을 사용하는 방과후 보육활동(방과후 특기적성 활동 포함)은 해당 교육청에서의 방과후 보육 관련 규정을 마련, 해당 학교가 주관하여 설치 운영(또는 위탁 등) 하는 데 법적,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의 세 가지 법적 근거 방안들은 방과후 보육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모두 필요하고 가능한 방안들이다. 방과후 보육이 하나의 법령에 근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아동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과후 보육 형태가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학교에서의 방과후 보육의 복잡한 책임소재 관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학교 내의 after school은 철저히 교육구청 관할이며 책임이다). 아동복지분야에서도, 아동보육분야에서도,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방과후 보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분야에서 추진토록 하면 될 것이다.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모형에 대하여

무리한 국공립 시설의 설치와 확대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여겨진다.

앞서 논의한 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은 현행 보육시설의 방과후 반 외에 민간 보육시설(중, 소규모), 부모(지역사회)협동 보육시설 중심으로 설치하여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존의 공부방은 이 법령에 근거한 민간 방과후 보육시설로 발전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방과후 보육의 새로운 적극 경계하고 막아야 한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은 사회복지관의 방과후 보육과 각종 아동복지시설의 방과후 보육서비스 외에 아동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의 방과후 서비스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의 모든 방과후 보육, 특기프로그램, 특기적성활동 등은 기본적으로는 초등학교 교육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이 법적 근거를 달리하여 설치 운영되어 아동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전달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여겨진다.

방과후 보육 교사(가칭)의 양성 교육과 자격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보아 방과후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성 제고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발제자의 제안대로, 초중등 교사 자격소지자의 아동보육 연수교육 후 방과후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과, 교육부 인정 대학에서 아동복지 및 아동교육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방과후 보육실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방과후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 부문에서 방과후 보육교사(대체로 영유아보육교사 자격소유)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한시적 자격부여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이 일정 기간 내에 방과후 보육관련 직무연수를 받은 후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제 연구에서 나타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재의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폐기하고, 우수 보육교사 교육원은 직무 연수 기관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한다.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제자가 제안한 방과후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에 동의한다. 그러나 별도의 방과후 보육정보센터의 설립보다는 기왕의 보육정보센터 기능을 확대, 활성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다양한 방과후 시설과 프로그램 때문에도 정보센터의 정보 관리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보육정보센터는 법적 근거가 다른 지역의 모든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며, 학부모와 방과후 보육교사 및 방과후 서비스시설과의 연결은 물론, 방과후 보육교사의 등록제도 시행 등으로 보육 인력관리 역할을 담당 할 수도 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는 지역내 방과후 보육시설 및 방과후 서비스 활동 자료는 물론, 중앙에서 하기 힘든 세밀하고 정확한 지역의 방과후 보육관련 자료(서비스 수요 추계 등)를 수집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급 관련 효율적 보육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방과후 아동보육 아동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서울번동초등학교 송 경 현

사례1.

학 생 : 선생님, 저 청소 오늘은 못해요.

선생님 : 왜?

학 생 : 수업 끝나고 곧장 학원엘 가야하거든요.

선생님 : 무슨 학원?

학 생 : 먼저 피아노 학원에 가서 1시간하고, 1시간 숙제 한 다음에, 컴퓨터 학원으로 가서 2시간 공부하고 나면, 엄마가 데리러 와요.

사례2.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으로 정해져 있으며 여러 시설을 하고 차량은 서행하도록 되어 있다.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내 아이 하나는 교문 앞이나 운동장에 내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른이 있는한 아동보육의 길은 멀고 험하다. 사회의 문화를 먼저 바꾸어야 한다.

사례 3. 초등학교 학생 중 집 열쇠를 목리로 하여 걸고 다니는 학생이 있다. 이 학생은 집에서 기다리는 어른이 없는 어린이임에 틀림없다.

사례 4.

학원에 가야 한다고 청소를 할 수 없다고 한 어린이가 현장학습 갔다 오는 날 3시에 도착할 예정이던 버스가 3시 30분에 학교에 도착했더니, “야, 신난다. 3시에 도착하면 학원가야 하는데 오늘은 늦어서 학원 안가도 된다.”하고 환호성을 하는 것을 보았다.

방과후 아동보육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사례들이다. 학교가 끝나면 어린이들이 가는 곳이 집이 아니다. 무엇인가 누구한테 배우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하는 것이 드물다. 부모님이 학원에서 만들어 놓은 스케줄대로 따라 하면 된다. 요즈음 어린이들은 어른만큼 바쁘다. 하루의 일과가 시간대별로 짜여져 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쉬고, 게으름피고 한가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도대체 없는 것 같다. 1학년부터 어린이들의 입에 “바쁘다”라는 말이 붙어 있다. 무엇이 바쁜 지도 모르면서 여하튼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가 보다.

그러나 어린이들과 잠깐만 대화를 해보면, 하기 싫은 피아노, 하기 싫은 영어, 하기 싫은

미술 등 부모님이 시켜서 아니면 무엇인가 안 배우면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거리가 먼 일로 시간과 에너지와 경제력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들이다.

초등학생들은 학교를 마치고 나면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나 가족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이 많다. 이런 초등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대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작할 때면 장래를 보고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방과후 초등학생 보육과 관련 한 발제자 김인순의 “방과후 아동 보육 현황”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시설현황에서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공부방, 초등학교는 어떤 보육 시설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혼선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2. 방과후 아동 보육 수요 추계에서 포괄적인 수요 추계 :130만 여명 ? 모의 취업별, 소득계층별, 학년별 수요 추계는 약 130만 여 명은 어떤 의미인가? 이들을 다 수용하려면 기존의 초등학교 학생의 약 33%이므로 현재 초등학교 수준의 33%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3. 정부의 방과후 시설 확충안과 관련하여 2001년의 경우 보육아동 정원이 2,090명 이었으며, 확충안에 따르면 2010년까지 579개소 15,128명 수준을 정해 놓고 있다.

4.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 장소에 대하여 아동, 학부모 모두 초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방과후 아동 보육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방과후 보육활동은 초등교육의 연장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 별도의 전용시설(초등학교의 유휴시설 활용 포함) 가칭 아동회관 과 같은 시설을 확보할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러시아의 경우 학교 교육의 후에 교육받을 수 있는 “청소년 궁전”과 같이 학교 교육과는 별도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5. 방과후 초등학생 보육시설은 시설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의 지원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 방과후 아동보육프로그램(보육과 교육의 비중) 초등학생과 학부모는 학습보충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교사들은 전인적 발달, 안전한 보호 등을 선호하고 있다. 이 부분도 방과후 아동 교육프로그램은 학습보충보다는 교사들의 의견처럼 전인적 발달이나 안전한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방과후 보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초등학생을 하루종일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방과후 보육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방과후 아동보육의 담당자에 대하여도 아동과 학부모는 초등학교 교사를 선호하고 있으나 교사들은 방과후 아동지도사를 선호하고 있다. 이 부분도 방과후 보육활동에

대한 아동과 학부모의 이해부족에 기인한 결과는 아닌지 의문이 간다.

7. 방과후 아동보육의 제도화에 관련하여 담당부처는 초등학생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보며, 보육 비용 부담은 보육시설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운영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단 저소득층은 국가 지원 가능) 교사와 아동의 비율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1 : 10-15로 아예 수준을 높여야 한다.

8. 아동 보육 담당교사의 자격은 새로운 자격을 만들기 보다는 현행의 보육교사 또는 초.중등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9. 초등학생 보육시설의 실내외 환경기준은 일부는 표준안 일부는 기관의 자율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제자 김재인의 “방과후 아동보육의 쟁점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하여는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기존 시설의 개방 중 초등학교의 개방과 관련하여 토론자의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초등학교의 개방은 일면 초등학생의 방과후 보육 시설 확대의 편리한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기존의 초등학교 교육활동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 다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초등학교의 유희시설을 이용한다고 할 때 운영의 주체는 반드시 초등학교가 아닌 독립된 운영기관이 되어야 한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다음 단추를 바르게 꿰 수 있다.

3. 방과후 아동보육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의 특기.적성 교육활동도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특기.적성 교육활동도 초등교육과는 별개의 교육활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현재 초.중등학교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활동관련 심의.자문기구이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기관이 아니다.

5. 장기적인 계획의 차원에서 보면 초등학교의 유희시설은 이용할 수 있으나 방과후 아동보육은 현재의 초등교육과는 전혀 별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방과후 아동보육은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교육활동이 끝난 이후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대책이다. 초등학교에서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활동을 계속하도록 제도를 고치면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방과후 아동 보육을 초등학교의 교육활동의 연장으로 볼 수는 없다. 초등교육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접근도 다른 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된다고 보며 방과후 아동보육의 장기적 대책을 세울 때 기준이 될 수 있도

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방과후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용어의 통일(아동, 초등학생, 어린이)이 되어야 한다.

둘째, 방과후 초등학생 보육활동 위해 초등교육을 하는 초등학교와는 별개의 초등학생 보육기관을 공교육화 하는 일(보육 및 특기.적성 교육)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방과후 초등학생 보육활동은 초등학교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이 아닌 초등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초등학생들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초등학생들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넷째 방과후 아동 보육은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하든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하는 일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초등학생을 중심에 두고, 먼 미래를 중심으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당면하는 방과후제도 문제와 시급과제

이 현선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1991년 본 복지관에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정서적인 안정을 꾀하고자 처음 시행되어 현재에 이른 방과후제도는 이제 제도화의 단계를 넘어 질적 전환의 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방과후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던 시절에 비해 현재는 많은 진일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론 제도화과정에서 제고되어야 할 사항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방과후제도의 근거법이 영유아보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방과후교사인력의 정당성, 합법성을 보육교사를 기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령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은 신체, 정서, 인지 등 그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대학에서도 유아교육학과가 있고 초등교육학과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실습을 한 자는 방과후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관 방과후교실에서 방과후실습을 받은 경우는 오히려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대학 4년간 전 생애에 걸친 인간의 욕구와 그 해결방안을 공부하고 학습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경우 “보육실습”명으로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과후교사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각 기관별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민간의 긍정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보육교사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라는 것이 최저선의 인력채용 기준이 되어야지 그 이상의 학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금 제고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아동과 관련된 실습을 시행했던 졸업생 중에 방과후교실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학습지도와 정서지도 그리고 아동이 처한 가정과 학교,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포기하고, 1년제 보육교사과정을 수료한 분으로 채용을 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묻고 싶다.

둘째, 구립방과후제도 지원에 있어 지원방식의 간소화와 운영체의 자율성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2003. 3월 동사무소 건물에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데 이는 구립방과후에 해당된다면 갑자기 지원방식을 변화(운영비 1만당 1,280,000원 → 교사인건비 50% + 운영비500,000원)하였

다. 내용상으로 금액은 본 복지관의 경우 470원만 인상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보육료를 75,000원에서 61,000원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요구조건이었다.

1999년 설치되어 안정적으로 보육하고 있는 북아현2동 방과후 어린이교실(평균인원38명 1학년 15명, 2-3학년 20-25명)의 경우 지난 3월에는 1,686,000원 적자를 내어 이월금을 사용하였으며 4월에는 인원을 4명 더 충원하였지만 243,000원이 적자가 났다.

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갖은 절약방법을 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적자가 예측된다면 기관으로서 이 사업수행의 계속성에 의문을 갖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원인은 보육료 감소가 결정적이긴 하지만 일방적인 정부지원방식 때문이기도 하다. 그간 방과후교실 2개반을 운영할 때 교사 인력을 1.5명을 사용하고 0.5명의 일용인력이 간식과 청소, 방학중 식사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운영비 지원방식이 아닌 인건비 지원방식으로 전환된 지금은 교사(2명)가 간식준비와 설거지, 청소를 하고, 일용인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1개반당 30명씩 보육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또한 이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항상 직접 조리하던 방식에서 빵, 과자 등의 인스턴트 식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그 단가도 낮추어야 할 실정이다.

구립 방과후 지원은 교사인건비 50%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보육아동 인원수별로 재산정되기를 요구한다.

2003년 신규개관 한 북아현3동 방과후 교실의 경우 1개반은 최저성원이 이루어져 인건비 지원을 받지만 1개반은 엄연히 교사와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미달로 지급을 전액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20명이 되어야만 지급을 개시하고 이후 인원이 16명으로 낮아져도 지급을 하지만 처음 16명이 되었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례로 개소 1년이하 기관은 15명이 도래한 시점에서 지급하고 1년이상 된 기관은 18명, 2년이상 기관은 20명 이런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

개관 초기의 방과후 교실은 인원미달이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기본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 책임을 민간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느껴진다.

보육료 단가 산정기준이 변화되어야 한다. (현재 구립어린이집 3세이상 아동보육료의 1/2)

아무리 쌀 과자와 빵도 500원인데 방과후 점심식대를 800원으로 하라는 내용이 지침에 있다. 간식도 아닌 점심을 800원에 먹이라고 하는 것이 방과후정부지침이라고 한다면 어느

학부모가 아이를 ale고 맡기겠는가?

보육료를 낼 수 있는 가정의 아동은 적당한 보육료를 내도록 하고(cf. 1주일에 1번 오는 학습지 비용이 5만원, 1일 40분 교육하는 피아노학원이 최저 8만원) 보육비가 부담이 되는 아동은 기관후원금을 지급하거나 자체적으로 감면을 하고 있었는데 무조건적인 금액하향으로 당황하고 있다. 제고되기를 바란다.

별도의 특기교육비를 징수하지 말고 반당 250,000원의 지원금으로 운영하라고 한다. 아동과 부모의 욕구가 특기교육과 학습지도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20명 아동의 특기교육비가 250,000원 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립방과후에 보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서 하나라도 확실히 하는 게 낫다고 학원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있다. 특기교육 강사비 현실화를 해 주던지 적당한 비용부담을 학부모에게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던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관으로서 기관의 명예와 양심에 저해되는 방과후운영(학력이 낮은 인력채용, 급간식의 저하, 과밀학급 운영....)이 예측되는 현 시점에서 금년 정부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